#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 비교법제 연구 12-20-8

##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김 은 환•정 이 근

#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 An Analysis of Legislation on Business License of China

연구자 : 김은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JIN YINHUAN 정이근(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br>Jeong, Yi-Keun

$$
\text { 2012. 9. } 30 .
$$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경제•사회 전반의 국제화, 자율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 국의 경우 정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장악하여 시장에의 신규참여에 여전히 높은 장벽을 설치함으로 일부 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square$ 이에 본 연구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기 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 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사 회•경제적 배경과 발전과정 및 법적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주요 쟁점별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기업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П. 주요 내용

$\square$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 제 2 장에서는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이어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는바, 영업허가제도는 국가의 경제규제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과 영업허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공유제경제를 주도로 하는바 영업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특정영역에서의 독점 적 지위를 확보하기도 함

○ 제도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계획경제시기의 전면적 영업허가, 개혁개방시기의 엄격한 영업허가와 2003년 이후의 예외적 영업 허가 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음
$\square$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

○ 제 3 장에서는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 는데,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통일적 법률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 고, 다만 각 개별 사업영역의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규 에 산재되어 있음

○ 따라서 각 산업별 구체적 허가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이 특별 법의 지위를 가진다면 보충적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 사항을 정 하고 있는 법률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데, 이에는 행정허가 법,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등이 있음
$\square$ 쟁점별 분석 및 시사점

○ 제4장에서는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 절차, 관할기관, 권리구 제제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제5장 결론부분에서 중국 진출기 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 중국의 경우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존재하며, 대 상범위의 불명확성,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또는 지역보호주의가 상존함

## III. 기대효과

$\square$ 본 연구는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발 전과정, 영업허가제도의 현황과 법적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기업의 영업 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제어 : 중국의 영업허가, 영업허가제도의 발전과정, 행정허가법, 회사등기조례, 영업허가규정, 허가관리절차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Although trade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s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society but the Chinese government remain set up a lot of barriers so a few industries can't invest in China yet.
$\squ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solutions for the foreign enterprises if they come across difficulties as investing or expanding investment in China. Though study the analysis of the social, economic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license system, research theoretical study of laws and regulations, analyze each issue. Put forward to the foreign enterprises who invested in China.

## П. Main Contents

$\square$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Chapter two is description of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is determined by the economic regulation of the country.

Therefore getting market access and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countries.

In China the public economy takes leading role in the economic life. The government use the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to prevent private capital and foreign capital enter the special areas for keeping monopolist position.

O Through studying institutional process of development we can know that the process through three periods of planned economy times, reform and opening up times and the period after 2003.
$\square$ The mandatory control of Chinese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Chapter three tried to descript the mandatory control of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There isn't a unified legal explanation, but we can find each kind of specific regulation about various industries.

O Therefore if all of the regulations of the various industries have their special positions, then general regulations have the general positions. For example, administrative license law, corporation law and administration of registration of companies.The Implication of the issue

Chapter four analysed the object and scope, procedure, competent authority and support system of business permission. Chapter five is the conclusion put forward a few implications for the companies have invested in China.

O Currently,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in China. No clear objectives, there are discriminative treatments between private capital and foreign capital and there is regional protectionism.

## III. Expected Effect

Through analyzing the above problems, put forward solutions for the foreign enterprises if they come across difficulties as investing or expanding investment in China.
2) Key Words : Business License of China, Process of Chinese Permission for Business System, Law of Administrative Licensing, Regulations Registration of Companies, Regulations of License, Procedure of Permission Managemen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제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제 2 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 17
제 1 절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 ..... 17

1. 경제규제방식과 영업허가권의 관계 ..... 17
2. 중국의 소유제형식과 영업허가제도 ..... 18
제2 절 영업허가제도의 제도적 발전 ..... 19
3. 계획경제시기의 전면적 영업허가(1949-1979) ..... 19
4. 개혁개방시기의 엄격한 영업허가(1979-2003) ..... 20
5. 2003년 이후 예외적 영업허가(2003~2012) ..... 22
제 3 절 영업허가제도의 법체계 ..... 24
6. 중국의 법체계 일반 ..... 24
7. 영업허가제도 관련 법체계 ..... 26
제4 절 영업허가제도의 특징 ..... 30
8. 영업허가행위의 법적 성질 ..... 30
9. 무해성심사이론 ..... 31
10. 영업허가제도의 특수성 ..... 33
제 3 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 ..... 35
제 1 절 행정허가법 ..... 35
11. 행정허가의 주체 ..... 35
12. 행정허가의 절차 ..... 37
13. 행정허가의 기간 ..... 37
14. 행정허가의 취소 ..... 38
제2 절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 38
15. 회사의 의의 및 종류 ..... 38
16. 회사의 설립요건 ..... 39
17. 회사설립의 등기 ..... 39
18. 등기절차 및 기간 ..... 42
제 3 절 산업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 44
19. 중화학공업(중공업) ..... 44
20. 금융업 ..... 51
21. 건설업 ..... 62
22. 물류산업(유통, 운송) ..... 65
제4 절 지역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 79
23. 북경시 ..... 80
24. 상해시 ..... 82
25. 산동성 ..... 84
제 4 장 중국의 영업허가에 관한 쟁점별 분석 ..... 87
제 1 절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 ..... 87
26. 영업허가의 범위 및 기준설정 ..... 87
27. 영업허가의 범위에 대한 검토 ..... 89
제2 절 영업허가의 절차 ..... 93
제 3 절 영업허가의 관할기관 ..... 95
28. 관할기관의 설정 ..... 95
29. 영업허가권의 충돌과 해결에 대한 검토 ..... 97
제4 절 영업허가의 관리 - 감독 ..... 98
30. 영업허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 ..... 98
31. 영업허가 관리•감독의 내용에 대한 검토 ..... 99
제5절 영업허가 관련 권리구제 ..... 100
32. 행정심판제도 ..... 101
33. 행정소송제도 ..... 102
34. 행정배상제도 ..... 104
제 5 장 결 론 ..... 107
참 고 문 헌 ..... 111

## 【부 록】

부록1: 영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117
부록2: 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14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경제•사회 전반의 국제화, 자율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정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장악하여 시장에의 신규참여에 여전히 높 은 장벽을 설치함으로 일부 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 다. 대중국 진출기업은 그 동안 중국에서 각종 인•허가의 신청이 법 인의 영업소 설치, 각종 사업의 착수 또는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

영업허가는 정부규제의 일종으로 영업허가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규 정된 일반적인 영업행위를 행정관청이 소정의 절차를 걸쳐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다. 영업허가제도 도입의 취지는 영업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 를 걸쳐 영업의 목적과 사회공익, 영업적 효과와 공익적 효과를 조화 시킴으로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공유제경제가 주축이 되며 다양한 경제형태가 병존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국가는 영업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민간자 본 또는 외국자본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영업주체의 자주적 선택이나 시장경쟁에 의 한 자율적 조절이 매우 어렵다.

중국에는 아직까지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통일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 으며, 개별법에서 산업별 영업허가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 하고 있다. 또한 개별법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각 산업별 구체적 허가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이 특 별법의 지위를 가진다면 보충적 적용이 가능한 영업허가에 관한 일반 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이에는 행정허가법,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외국인투자 산 업지도 목록 등이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 언하고 농수산물 등 민감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서비스, 투자 등에 대 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 국 간 교역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분야 협력의 확대도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 립이나 기존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 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발전과정 및 법적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영업허가의 대 상 및 범위, 영업허가의 절차, 영업허가의 관리•감독과 권리구제 등 쟁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일반적 법률 및 개별 법률의 주요내용과 산업별 중국 진출기업의 진출현황 및 향후전망, 시장진입 조건에 관한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정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밝히고, 제 2 장에서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발전과정, 영업허가제도의 법체계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제 3 장에서는 기업 전체에 대한 영업허가제도의 현황과 법적규제와 산업별 및 지역 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를 핵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영업허가에 관한 쟁점별 분석과 더불어 제5장 에서 대중국 진출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 제 1 절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

## 1．경제규제방식과 영업허가권의 관계

영업허가제도는 국가의 경제규제방식에 따라 결정되며，이에 따라 시장진입과 영업허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미국의 경우 경제 질서 속에서의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설정하는 사항은 주로 시장조절 기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 연 독점적 사업，과다경쟁 내지 공급이 부족한 사업이나 생산품 또는 서비스가 안전，품질，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 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의 배치를 위하여 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1)}$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원칙에 따라 영업허가는 공공이익에 영향을 주 거나 사회적 위험성을 야기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이루어진다．즉，병 원의 설립，철도사업의 경영 등 공익사업의 경영에 관한 허가，악영향 을 야기하는 상공영업허가，공해방지법상의 시설허가，건축법상의 시공 허가 등이 이루어진다．${ }^{2)}$

일본의 경우에는 사익사업 자유의 원칙 및 공익사업 일반금지의 원 칙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풍속영업의 허가，의사면허，목욕탕 및 식 당영업허가 등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경찰허가 등 일 반 영업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그밖에 전력•가스 등 공용사업，철 도•도로 등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는 사업은 특허제도를 시행한다．3）

[^0]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또는 비교적 엄격하게 하는 경우 영업허가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 게 되는 반면에, 정부가 간접적 규제에 그치고 시장규제에 대하여 완 화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영업허가 대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게 된다. 그러나 공익, 부의 경제효과, 과다경쟁, 공공용품의 공급, 자연 독점 등 영역의 사업에서 대다수의 국가는 영업허가 및 특허제도 등 을 취하고 있다.

## 2. 중국의 소유제형식과 영업허가제도

경제제도와 영업허가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제형식은 영업허가제도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제경제를 주로 하는 국가는 경제제도의 운용에서 국가이익 본위와 공유제경제 주체를 본위로 하고 경제주체의 영업기회 부여에 대하여도 국유경제주 체 또는 집단경제 주체로 접근한다. 국가는 영업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민간자본의 특정영역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공권 력을 이용하여 특정영역에서의 이익을 보호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 기도 한다. 국유경제가 주도적인 국가에서는 이러한 선택은 매우 보편 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사유경제를 주로 하는 국가에서는 자 원이 대부분 민간투자 주체에 집중되므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자원 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영업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영업주 체의 자주적 선택이나 시장경쟁에 의한 조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 가의 영업허가를 이용한 개입은 감소되고, 영업허가의 모델은 자유주 의 또는 예외주의로 표현된다.
중국의 경우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공유제가 주도하는 경제체제 를 시행하였으며, 1956년 사회주의 개조운동4) 이후에 확립된 전민소
4) 1955 년 10 월 열린 중앙위원회는 모택동의 주장대로 농촌 집체화의 가속페달을 밟 았다. 1955 년 말까지 $63.5 \%$ 의 농촌가구가 합작사에 가입했다. 1956년 11월까지는

유제경제를 주요 경제체제로 하는 단일 소유제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민간경제의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1956년부터 1979년까지 국유경제가 지배하는 시기에 국가는 행정심사비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였다．이로써 영업허가제도는 근대적 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5）

## 제 2 절 영업허가제도의 제도적 발전

중국에서 영업허가제도는 계획경제시기의 전면적 영업허가，개혁개 방시기의 엄격한 영업허가와 2003년 이후의 예외적 영업허가 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아래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계획경제시기의 전면적 영업허가（1949－1979）

신중국 성립 이후 개혁개방 선언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이 전민소유 제를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행하는 시기이며，전면적인 영업허가가 제도화 된 시기이기도 하다．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영업허가제도의 수립은 사회주의 공유제경제를 지탱하는데 있 어서 큰 의미를 가지며，특히 전민소유제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유경제나 민간투자 주체의 영업에 대하

[^1]5）肖海军，论我国营业行政许可的制度变迁与改革路径，财经理论与实践，2009（2），124면．

여는 기본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따라서 영 업허가는 주로 사유경제 주체와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둘째，개인과 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단체의 영리성 활동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영업허가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여 영업에 관련 된 대부분의 단계에서 허가가 이루어졌다．

셋째，이 시기에 있어 영업허가에 대한 대부분의 근거규정은 행정법 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 지 못한 관계로 당의 문건，사업장 내부문건，지방성 법규내지 촌급 （村級）${ }^{6}$ ）행정구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넷째，영업허가에 대한 심사와 허가절차가 까다롭고 영업허가에 관 한 각종 규범성 문건이 부여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광범위하여 영업허 가 과정에서 허가기관의 자의성이 문제가 되었다．

다섯째，특히 이 시기에는 영업허가에 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행 정심판，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영업허가에 관한 국민 또는 기업의 권리보호가 미흡하였으며，정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7）

## 2．개혁개방시기의 엄격한 영업허가（1979－2003）

개혁개방시기의 영업허가제도는 다시 두 단계로 구분된다．1979년부 터 1993년，1993년부터 2003년까지이다．전자는 전통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시행되던 전면적 영업허가에 대한 완화 및 엄격한 영업허가제 도의 확립단계이며，후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엄격한 영업허가의 개혁단계라 할 수 있다．이 시기 정부가 취한 영업허가제 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촌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장 낮은 행정구역이다．
7）肖海军，앞의 글， 125 면．

첫째，영업허가제도의 확립은 전민소유제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제도를 확립하는데 의미를 두며，이와 동시에 사영경제 및 민간투자 주체의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전제하에 적절 한 장려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부 산업에 대한 사영경제 또는 민간투자 주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둘째，그러나 개인，기업 및 기타 사회단체의 대다수 영리성 활동은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영업허가의 범위는 여전히 광 범위 하다．

셋째，영업허가의 설정 권한과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 규범화 단계로 나아갔으며，영업허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률을 비롯 하여 행정법규 차원으로 확립되어 그동안 행정규칙，당의 문건，사업 장 내부규정，지방성 규정 및 촌급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제도가 확립 되었다．

넷째，영업허가에 대한 심사절차가 규범화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 또는 집행기관의 재량이 축소되어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성이 감소되었다．

다섯째，영업허가와 관련된 법률 및 법규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허가에 관한 권리구제제도가 도입되었다．8）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광범위한 행정심사비준 및 영업허 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2009년 국무원에서 행정심사비준 제도 개혁업무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 범위의 65 개 행정심사비 준 사업의 4000 여개 행정심사비준 사항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 다．9）2001년 10월 18 일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업무 실시의견에 의하면，정부와 기업의 분리원칙（政企分开的原则）및 정부 사업 분리원칙（政府与事业分开的原则）에 부합하지 않는 심사비준 사항，

[^2]시장개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사비준 사항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정심사비준 사항에 대하여 전면적인 정리를 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2년 11월 1 일 국무원은 제 1 차 행정심사비준 항목의 삭제에 관한 결 정을 하여 789개 사항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삭제하였다. ${ }^{10)}$ 2003년 2 월 27 일 다시 제2차 행정심사비준 항목의 삭제와 관리방식 변경에 관 한 결정을 하여 406개 항의 심사비준 항목을 삭제하였다.11)

## 3. 2003년 이후 예외적 영업허가(2003~2012)

2003년 8월 27일 제정된 중국의 행정허가법은 영업허가제도의 기본 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2003년 이후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새로운 발전단계 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영업허가제도의 확립은 다양한 소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하 고, 사유경제 주체와 민간투자자의 영업을 장려•지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영업허가제도는 더 이상 사유경제나 민간사업자 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공정한 영업 경쟁 및 시장개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과 기업 및 기타 사회단체의 절대 다수의 영리성 경제활 동은 행정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허가의 대상 범위가 매우 한정되었다. 다만 국가안전, 경제안정, 사회공익 및 환경생태에 관한 사업에 한하여 영업허가를 취득한다.

셋째, 영업허가의 설정 권한과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 으며, 일부 지방성 법규 내지 당의 문건, 기관 내부규정 등에 의한 영 업허가는 금지되었다.

[^3]넷째，영업에 관한 행정심사비준 및 허가절차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되고，법률과 행정법규는 허가기관의 권한과 재량을 명확히 규정하기 에 이르렀다．

다섯째，법률과 행정법규는 영업허가에 따른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12)}$ 중국은 행정허가 법의 시행에 앞서 국무원이 중심이 되어 일부 행정허가 대상 항목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13）

행정허가법 시행 후 국무원은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 였고，2004년 7월에는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14）을 공포함과 동시 에 정부 승인의 투자항목 목록을 공포하였다．이 투자항목 목록에 의 하면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주로 공공안전，공익 및 환 경생태와 관련된 것이다．2005년 2월 19일 국무원이 발표한 사영업자 등 비공유제의 발전을 장려•지원 및 유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15） 은 비공유제 경제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평등대우 및 평등진입의 원 칙을 선언하였다．

2004년 6월 14일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새로운 기업등기절차 에 관한 기업경영범위등기관리규정은 기업등기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 를 진행하던 데로부터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규정은 기업의 경영범위 변경등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새로 개정된 회사법은 회사법의 규율대상인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12）肖海军，앞의 글， 126 면．
13）2004년 5월 19 일 발표한 제3차 행정심사비준 대상 항목의 취소와 조정에 관한 결정에서는 495개 항목에 대한 삭제와 조정이 있었다．또한 2004년 6월 29일에는 행정심사비준사항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500개 항목을 확 정하였다．이 규정（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公报 2004）은 2004년 7월 1일부터 행정허가법과 함께 시행되어 왔다．
14）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国务院公报，2004（25）。
15）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国务院公报 2005（10）．

행정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준칙주의를 원칙으로 하였 으며，허가주의를 예외로 하는 회사설립의 원칙을 규정하였다．이로써 예외주의의 영업허가제도가 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다．16）

## 제 3 절 영업허가제도의 법체계

## 1．중국의 법체계 일반

법령의 종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이 인정한 법령의 종류에는 법률，대통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 제명령，대통령령，총리령과 부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조약•국제법규 및 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수많은 법령들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중국 헌법이 인정한 법 령의 종류에는 헌법과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 조례，행정규정，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법，국제조약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법 령 상호 간의 위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17)}$ 중국의 법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며，그 외의 모든 법령은 헌법의 하위에 있다．법률은 헌법 다음의 지위를 가지며 기타 법령의 상위에 있다．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헌법에

16）肖海军，앞의 글， 126 면．
17）각 법령은 제정 시기가 다르고，제정이유，기본이념，적용범위와 대상이 다를뿐더 러，법령의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상호간에 상충될 여 지가 있다．따라서 이들 법령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공통된 특징을 가진 법령들을 모아서 분류하여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이현정， 행정학총론，대경북스，2009년，405면）．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18）그 다음으로는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자치구조례，단행조례의 순위이다．19）

헌법에 의하여 비준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법체계에 수용된다．또한 국제조약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국제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하는 경우는 제 외된다．${ }^{20)}$
［표 1］입법형식과 입법권

| 입법기관 | 입법형식 | 입법권 |
| :---: | :---: | :---: |
| 전국인민대표대회 | 헌법 | 개정권 |
|  | 기본법률 | 제정 • 개정 • 폐지권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헌법 | 해석권 |
|  | 기본법률 | 해석 및 개정권 |
|  | 기본법률 이외의 법률 | 제정，개정 및 해석권 |
| 국무원 | 행정법규 | －법률의 시행을 위한 규정 의 제정권 <br> －위임입법권의 행사 |

18）입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은 최고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률，행정법규，지 방성법규，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및 규장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다．헌법에 위반되 는 규범은 효력이 없다．
19）특히 지방성법규가 국무원의 행정법규 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유에 의한다．첫째，중국은 단일제의 중앙집권국가로서 지방의 권력은 인 민의 자치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중앙의 수권에 기인한다는 점이다．따라서 지방 성법규의 제정 권력은 중앙으로부터 나온다．둘째，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 하여 제정되며 전국 범위에서 시행되지만，지방성법규는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이다（乔晓阳，立法法讲话，中国民主法制出版社，2000年，285면）．
20）민법통칙 제 142 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중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약을 우선 적 용한다．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다고 서명한 것은 제외한다．

제 2 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 입법기관 | 입법형식 | 입법권 |
| :--- | :--- | :--- |
|  | －법령범위 내의 행정법규 제 <br> 정권 |  |
| 지방입법기관 <br> （지방 인민대표대회 <br> 및 상무위원회） | 지방성법규 | －법률 및 행정법규의 시행 <br> 을 위한 규정의 제정권 <br> －지방성법규 제정권 |
| 중앙부처 및 국무원 <br> 각 위원회 | 부문규장（정부규장） |  |$\quad$| 법률과 행정법규의 시행을 |
| :--- |
| 위한 규정의 제정권 |

출처：朱羿锟，中国法概论，法律出版社，2007年，8면의 표 양식 및 내용 참조．

## 2．영업허가제도 관련 법체계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최고규범 으로 하여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정부 규장，지방성 규장，자치 조례 및 단행조례，경제특구의 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법 체계 속에서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통일적 법률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고，다만 각 개별 사업영역의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규에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영업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개별법규에 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법규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는 상항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즉，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앙 입법기관 입법 또는 지방 입법기관의 입법을 불문하고 개별 단행법에 의하여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허가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정 하고 있는 규범을 보충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규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각 사업영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특별 법의 지위를 가진다면 보충적 적용이 가능한 법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몇 가지 법률 및 규정을 소 개하고자한다．

## （1）행정허가법

행정허가법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허가행위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 기존 행정허가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및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 른 허가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로 이해할 수 있 다．21）이러한 입법목적을 배경으로 한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의 설정， 허가의 시행기관，시행절차，신청과 수리，심사와 결정，기한，청문，허 가의 변경과 연장 등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허가에 관한 구체적 처분 역시 행정허가처분의 유형이므로，특 히 영업허가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에는 행정허가법의 규율대상이 된다．따라서 영업허가관련 법제는 행 정허가법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 （2）회사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정 회사법은 WTO 가입 이후 글로벌화 된 중국의 새로운 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를 구축함으 로써 국제적 경제규범을 국내적으로 수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회 사법은 중국에서 내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회사의 지사 （영업소）가 적용대상이다．22）

중국의 회사법은 총칙，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유한책임회사 의 지분양도，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주식유한회사의 주식발행 및 양도，회사임원의 자격 및 의무，사채，재무 및 회계，회사의 합병 분리 등，회사의 해산 및 청산，외국회사의 지사（영업소），법적책임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법 총칙에서 정한 회사설립등기에 관한 규정 및 영업허가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회사의 설립조건，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규정 등은 영업허가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23）

## （3）회사등기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의 등기법제는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주의24）를 취하고 있다．회사 등기관리조례 제2조에서는＂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설립，변 경 및 소멸은 본 조례에 의한 회사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제 3 조에서는＂회사는 등기기관에서 등기를 한 후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이로써 법인자격을 취득한다．회사등기기관에서 등 기를 하지 않으면 회사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2）이정표，중국 회사법，박영사，2008년， 26 면．
23）이와 관련하여 회사법 제 6 조，제 7 조，제 23 조의 내용 참조．
24）등기는 회사의 성립，변경 및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라고 보는 입법주 의이다．

있다. 나아가 제 26 조에서는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규정은 법인인 회사의 영업허가에 관한 법률규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세산업 목록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영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목록은 대중국 투자 시 필수적으 로 파악해야 할 내용이다. 특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2011년 1 월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발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25)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장려, 허용, 제한 및 금지의 4종류로 구 분되며 동 목록에서는 장려,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 다. 즉, 규정에 없는 사항은 허용하는 항목으로 이해하면 된다.26)

## (5) 중국의 법제도 이해에서 주의할 점

중국의 국가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 법률을 비롯하여 각 행정 법규로 구성되어 있고 규범의 효력에 있어서도 상하관계 또는 수평관 계를 이루며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자로서 특히 중국법제의 이해에서는 각 지방성법규를 비롯한 행정법규의 상세한 이 해가 필요하다. 이는 중국의 지리적 또는 인문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
25) 김성화, 중국 경제발전 전환시기의 외국인투자법제, 영산대학교 2012년 국제법무 컨퍼런스 자료집, 4면.
26) 자세한 내용은 정이근, 중국투자법 핵심요약, 영산대학교 기업법무지원센터, 2011 년, 32 면.

여 개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직접 실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정부 의 구체적 정책이 반영된 행정입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영업허가 제도와 관련한 지방성 법규의 이해는 투자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위에서 서술한 국가 범위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이 존재하지만 상해시의 경우 이 목록을 근거로 상해시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 $12 \cdot 5$ 계획（上海市吸收外资和境外投资十二计划）을 발표하 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는 이 계획을 통하여 $12 \cdot 5$ 기간（2011－2015）상 해시의 외자유치정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공적 투자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 제 4 절 영업허가제도의 특징

## 1．영업허가행위의 법적 성질

영업허가행위는 행정허가의 구체적 형식에 해당되는데 행정법상 영 업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몇 가 지 관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7)}$ 첫째，권리부여설이다．이 학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의하면，영업허가는 행정기관이 영업허가의 신청인에 게 그가 본래 가지지 못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8)}$ 이 학 설에 의하면 신청인이 획득하는 것은 선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특권으로 이해한다．둘째，영업허가를 권리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학설 이다．이 학설에 의하면，영업허가는 신청인에게 그가 원래 가지지 못 한 권리를 부여 내지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연히 누려야 할

[^5]자유 또는 권리의 회복으로 이해한다．${ }^{29)}$ 셋째，검증설의 입장이다．이 학설에 의하면 영업허가는 신청인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격 및 조건을 가진 자인지 검증하여 적법한 증명을 하는 것이고 어떠 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0)}$ 넷째，영업허가를 특권의 설정으로 보는 입장이다．영업허가의 신청절차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 득한 경우 특정한 사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이는 곧 허가주체가 특정 인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는 영업 허가주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31） 다섯째，영업허가의 성질을 무해성심사로 보는 입장이다．무해성심사설 에 의하면 영업허가 등 행정허가는 행정상대방인 국민의 신청에 의하 여 허가주체인 행정기관이 당해 신청인이 특정사업에 종사함에 불구 하고 특별한 해악이 없는지 여부，즉 무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32)}$ 이 외에도 부작위 의무해제설，절충설 등의 입장이 각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3)}$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무해성심사이 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무해성심사이론

중국 행정허가법 제 2 조는＂본법에서 말하는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개인，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기하여 법정 절차에 근거한 심사 를 거쳐 특정한 사업에 참여토록 허가하는 행위이다＂고 정하고 있다．34）

29）朱维究•王成栋，一般行政法原理，高等教育出版社，2005年，336品．
30）郭道晖，对行政许可是赋权行为的质疑：关于享有与行使权利的一点法理思考，法学， 1997（11），8면．
31）姜明安，行政法与行政诉讼法，北京大学出版社，1999年，183면．
32）刘东亮，앞의 글， 116 면．
33）영업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행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江必新，论行政许可的性质，宪法学行政法学，2004（8），中国人民大学复印报刊资料，pp．27－31．
34）行政许可法 第二条：本法所称行政许可。是指行政机关根据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申请，经依法审查，准予其从事特定活动的行为。

행정허가법의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허가（영업허가 포함）는 상 술한 무해성심사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에서도＂자유란 타인에게 해가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종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이는 계몽시대 이래 자유에 대한 모범적 정의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업허가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행정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영업허가 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당 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행정기관이 그 종사행위의 무해성을 심사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한은 결코 해당 영업활동의 근본적인 금지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무해성 심사는 신청인이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배제하여 다른 국민 의 자유와 권리 또는 사회공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 다．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신청인이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했는 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건 및 자격을 갖춘 경우 당해 사업에 종사할 것을 허가하고，법규가 정한 조건이나 자격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사를 허가할 수 없다．

또한 무해성심사론에 근거한다면 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권 한행사는 보다 명확해지며 허가주체의 법적책임 역시 강화될 여지가 있다．일종의 사전감독제도로서 영업허가증의 발급으로 허가기관의 임 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허가의 내용은 영업허가의 전체 과정 에 미치게 된다．즉，영업허가행위는 간단히 허가증의 발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영업허가 관련 사항의 전 실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36）허가증의 발급내지 불허가 등 단계뿐 만 아니라 허가에 따른 영업활동 중에 일어나는 허가 관련 중지，변경 또는 취소 등을 비롯 하여 허가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허가주체인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35）刘东亮，앞의 글，119면．
36）罗文燕，权利限制与权利保障一对行政许可制度的再认识，行政法学研究，2003（3），66면．

되는 것이다．이처럼 무해성심사론에 입각하면 영업허가기관은 전체 영업과정에 대한 감독•검사•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 3．영업허가제도의 특수성

영업허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역에 관련되는 행정허가이 며，따라서 허가주체인 행정기관이 신청인인 투자주체로서의 자격 또 는 영업주체로서의 자격 및 그 영업능력 등을 심사•판단•인정•확인 하여 각종 영업허가증의 형식으로 표현해 내는 행정허가행위이다．영 업허가의 실질은 특정 신청인에 대한 투자주체，영업주체 및 영업능력 의 부여만이 아니고，무해성 심사에 기초하여 법률 및 정책에 의하여 제한 또는 일시적으로 박탈되었던 본래의 민사주체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와 권리，영업주체로서의 자격 및 영업능력을 정식으로 회복하는 것 내지 법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37)}$

첫째，영업의 본래적 성격과 영업자유권의 당연성에서 보면 영업은 모든 민사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며 법규의 불비나 정책의 불명을 이유 로 부정될 수 없고，오직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법률내지 법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박탈되거나 조건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둘째，영업이라는 개념의 발전과정에서 보면，초기의 영업은 자발적 일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았고 오직 사회공동체의 경제적 안전，공공질서를 위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규제가 되기도 하였 다．근대이후 영업규모의 확대，생산과 경영의 전문기술화로 인하여 영 업활동이 사회공동체 및 자연에 미치는 역효과가 갈수록 증대하여 영 업에 대한 제한 및 영업활동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영업자격이나 능력의 제한은 조건적인 것이며，

[^6]기본적으로는 사회가 정한 규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 됨에 그치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 의미의 민사주체로서 각 국가의 국민이 가지는 영업의 자유권과 영업의 기회는 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으로 보면 각 민사주체로서 국민이 누리는 영업의 기회와 영업의 권리는 일정정 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각 국가내지 지역의 시장진입에 관한 제도의 차이라 할 것이며, 즉 영업허가제도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영업허가의 실질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영업허가는 일부 독점 적 영업영역 또는 산업을 제외하고 특정한 주체에게 특정한 영업주체 로서의 자격내지 능력을 인가 또는 확인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서 배 타성을 갖지 않는다. 배타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신청인 이외의 기 타 민사주체가 장래 영업적 투자를 하거나 특정형식의 영업조직을 결 성하거나 특정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잠재적 영업자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섯째, 영업허가제도의 취지에서 보면, 영업허가질서를 확립하는 목 적은 근본적으로 영업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 고, 영업영역에 진입하려는 자의 영업주체로서의 자격과 행위요소가 사회공동체의 경제안전 및 공공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회공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필요한 심사를 함으로써 영업의 사적 목적 과 사회 공익적 목적, 영업적 효과와 공익적 효과를 조화시키고자하 는 데 있다.

## 제 3 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

## 제 1 절 행정허가법

중국에서 행정허가는 정부와 시장，정부와 사회일반，행정권과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권리에 관계되고 행정권의 배분 및 운용방식 등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행정허가법의 제정은 법치행정의 전면적인 추진이며 정부행위의 법제화 및 합리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행정허가는 중요한 행정권으로서 정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의 사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사전적 통제수단 이다．그러나 법제도적 규범화가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 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38）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곧 행정허가법의 입법배경이 되는 것이다．${ }^{39)}$

## 1．행정허가의 주체

행정허가법 제 12 조에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에 의해（1）국가안전，공공안전，경제의 거시조정（예，투자항목，산업배치，수출입관리 등），생태환경보호 및 국 민의 건강•생명•재산의 안전 등에 직접 관계되는 활동（예，약품관리 법규에 의한 활동 등）으로 법정조건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는 사항，（2）

[^7]자연자원의 개발이용，공공자원의 배치 및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특정업종의 시장진입 등，특정한 권리의 부여가 요구되는 사항，（3）공 공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직업，업종으로 특별한 신용이나 명예，특수 조건 또는 기능 등 자격이나 자질이 요구되는 사 항（교사，변호사의 자격 등），（4）공공안전，국민의 건강•생명•재산의 안전 등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설비，시설，생산품，물품으로서 기술기 준이나 기술규범에 따라 검험，검측，검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심사결 정을 요하는 사항（항공기，선박，자동차의 설계•생산이나 축산물도축 에 관한 것 등），（5）기업 또는 기타 단체의 설립 등 주체자격의 확정 （기업법인의 등기 및 사회단체，사업단위의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사 항，（6）법률，행정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이다．${ }^{40) 41)}$

또한 동법 제 13 조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허가 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1）개인과 법인，기타 단 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2）시장경쟁 시스템이 유효하 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상품가격，일반 업종에 대한 투자），（3）업계조

[^8]직이나 중개기구42）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4）행정기관 이 사후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방식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다．${ }^{43)}$

## 2．행정허가의 절차

개인，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특정한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행정 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청서 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행정기관에 행정허가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허가신청은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법률이 규정한 형식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며，신청서의 실질적 인 내용에 대한 현장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 이해관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청인과 이해관계자는 이에 대한 의견진술 의 권리를 가진다．

## 3．행정허가의 기간

행정허가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행정허가 기간은 신 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10 일간 연장할 수 있다．

[^9]그러나 하나의 행정허가가 여러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경우 그 처 리기간은 45 일이며，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 일간 연장할 수 있다．${ }^{44)}$

## 4．행정허가의 취소

행정허가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 직원의 직권남용，직무 태만이 있 는 경우 또는 법정 권한을 초월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단 허가 의 취소가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행정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신청인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입 힌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 2 절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 1．회사의 의의 및 종류

중국 회사법에서＂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법인으로，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이하＇주식 회사＇로 칭함）로 구분된다（회사법 제2조）．45）따라서 회사의 상호에는

[^10]그 종류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주식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 다（동법 제8조）．${ }^{46)}$

회사는 기업법인으로서，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하며 재산에 대한 권 리 즉，재산권을 가진다．회사는 그 전체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지 고，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진다．47）

## 2．회사의 설립요건

회사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2005년 개 정 법률은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요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 고 있는데， $10 \sim 50$ 만 위안으로 규정되었던 유한책임회사 설립 최저자본 금을 3 만 위안으로 낮추고，자본금을 2 년 동안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주식회사 설립에 관하여는 최저자본금을 1,000 만 위안에서 500 만 위 안으로 감소하였으며，화폐로 환산 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모든 자산을 출자목적물로 허용하고， $20 \%$ 로 규정되었던 비화폐자산 출자상한비율 을 $70 \%$ 까지 확대하였다．그밖에 기업의 해외투자를 순자산의 $50 \%$ 이 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 3．회사설립의 등기

회사법 제6조와 제7조에서 영업허가증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바 법률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으로부터 회사영업

[^11]허가증을 발급받는다．영업허가증의 발급일자가 회사의 설립일자이다．
＂허가증＂또는＂등록증＂이란 각종 영업허가증，등록증과 같이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를 말하며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영업허가증 또는 생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회사영업허가증에는 반드시 회사의 명칭，주소，등록 자본，실제납입자본，경영범위，법정대표 성명 등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회사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는 반드 시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동법 제7조）．48）

## （1）유한책임회사의 설립요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의 구성원 및 주권의 수， 최저자본금，회사정관，상호 및 조직도，영업소 또는 주소에 관한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 23 조）．49）유한책임회사의 경우 50 명 이하의 주 주가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회사정관에는 회사 명칭과 주소，영업범위，등록자본금，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출자방식•출자 액•출자시간 등 출자에 관한 사항，조직구성 및 생산방법과 직권 등， 법정대표，주주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기재한다（동법 제25조．）${ }^{50}$

[^12]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등기기관에 신고한 전체 주주가 납입 을 약정한 출자액이며，첫 번째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0 \%$ 이상이어 야 한다．자본금은 회사설립 후 2년 안에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투자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후 5년 안에 납입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51）
출자방식과 관련하여 화폐 또는 현물，지적재산권，토지사용권 등 비화폐자산의 출자도 가능하다．그러나 화폐출자가 등록자본금의 $30 \%$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동법 제27조）．${ }^{52)}$

## （2）주식회사의 설립요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 방법이 있 다．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 법이며，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나머지 잔여주 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별도로 모집하는 방법이다（동법 제78조）．${ }^{53)}$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 \sim 200$ 인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이 중국에 거소를 둔 자여야 한다（동법 제79조）．${ }^{54)}$ 발기인은 회의를 소집하여 회사설립에 의하여 발기인이 취득하거나 부 담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51）公司法 第二十六条 第一款 有限责任公司的注册资本为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全体股东认缴的出资额。公司全体股东的首次出资额不得低于注册资本的百分之二十，也不得低于法定的注册资本最低限额，其余部分由股东自公司成立之日起两年内缴足；其中，投资公司可以在五年内缴足。
52）公司法 第二十七条：股东可以用货币出资，也可以用实物，知识产权，土地使用权等可以用货币估价并可以依法转让的非货币财产作价出资。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不得作为出资的财产除外。对作为出资的非货币财产应当评估作价，核实财产，不得高估或者低估作价。法律，行政法规对评估作价有规定的，从其规定。全体股东的货币出资金额不得低于有限责任公司注册资本的百分之三十。
53）公司法 第七十八条：股份有限公司的设立，可以采取发起设立或者募集设立的方式。发起设立，是指由发起人认购公司应发行的全部股份而设立公司。募集设立，是指由发起人认购公司应发行股份的一部分，其余股份向社会公开募集或者向特定对象募集而设立公司。
54）公司法 第七十九条：设立股份有限公司，应当有二人以上二百人以下为发起人，其中须有半数以上的发起人在中国境内有住所。

주식회사의 등록자본금은 500 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발기설립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등기기관에 신고한 전체 주주 가 납입을 약정한 출자액이며，첫 번째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0 \%$ 이상이어야 한다．자본금은 회사설립 후 2 년 안에 분할하여 납입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투자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후 5년 안에 납입하여 야 한다．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은 등기기관에 신고한 불입 된 주금총액이다（동법 제81조）．${ }^{55)}$

회사정관 또한 주식회사 설립 시 중요한 요건으로 회사 명칭 및 주 소，영업범위，설립방식，발행할 주식총수 및 금액，등록자본금，발기 인의 성명과 주소，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직권，법정대표，이 익배당방법，회사의 청산 및 해산 방법 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동 법 제82조）．${ }^{56)}$

## 4．등기절차 및 기간

회사설립등기를 위해 상호를 정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심사를 요 청하여야 한다．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상호의 중복 또는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청한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55）公司法 第八十一条：股份有限公司采取发起设立方式设立的，注册资本为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全体发起人认购的股本总额。公司全体发起人的首次出资额不得低于注册资本的百分之二十，其余部分由发起人自公司成立之日起两年内缴足；其中，投资公司可以在五年内缴足。在缴足前，不得向他人募集股份。股份有限公司采取募集方式设立的，注册资本为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实收股本总额。股份有限公司注册资本的最低限额为人民币五百万元。法律，行政法规对股份有限公司注册资本的最低限额有较高规定的，从其规定。
56）公司法 第八十二条：股份有限公司章程应当载明下列事项，1）公司名称和住所，2）公司经营范围，3）公司设立方式，4）公司股份总数，每股金额和注册资本，5）发起人的姓名或者名称，认购的股份数，出资方式和出资时间，6）董事会的组成，职权和议事规则， 7）公司法定代表人，8）监事会的组成，职权和议事规则，9）公司利润分配办法，10）公司的解散事由与清算办法，11）公司的通知和公告办法，12）股东大会会议认为需要规定的其他事项。

여부를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안에 결정해야 하며，유한책임회 사 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상호의 뒤에 붙이면 된다（조례 제14조， 제 15 조）．${ }^{57)}$ 공상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상호의 유보기간은 6개월이며， 유보기간 동안 본 상호를 사용하여 상행위를 할 수 없으며，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조례 제16조）．${ }^{58)}$

상술한 설립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총회에서 지정하는 대표 또는 대 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한다．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위임장，회사정관，자본금 납부증명，주주 의 법인자격증명 또는 신원증명，이사•감사•사장의 성명，주소 및 겸 직증명，법인대표 재직증명과 신원증명，상호사전심사통지서，영업소 또는 주소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17조）．${ }^{59)}$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발기인 총회 회의록，회사 정관，재무감사보고서，자본금 납부증명，발기인의 법인자격증명 또는

57）公司登记管理条例 第十五条：设立有限责任公司，应当由全体股东指定的代表或者共同委托的代理人向公司登记机关申请名称预先核准；设立股份有限公司，应当由全体发起人指定的代表或者共同委托的代理人向公司登记机关申请名称预先核准。申请名称预先核准，应当提交下列文件，1）有限责任公司的全体股东或者股份有限公司的全体发起人签署的公司名称预先核准申请书，2）股东或者发起人的法人资格证明或者自然人的身份证明，3）公司登记机关要求提交的其他文件。
公司登记机关应当自收到前款所列文件之日起 10 日内作出核准或者驳回的决定。公司登记机关决定核准的，应当发给《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58）公司登记管理条例 第十六条：预先核准的公司名称保留期为 6 个月。预先核准的公司名称在保留期内，不得用于从事经营活动，不得转让。
59）公司登记管理条例 第十七条：设立有限责任公司，应当由全体股东指定的代表或者共同委托的代理人向公司登记机关申请设立登记。设立国有独资公司，应当由国家授权投资的机构或者国家授权的部门作为申请人，申请设立登记。法律，行政法规规定设立有限责任公司必须报经审批的，应当自批准之日起90日内向公司登记机关申请设立登记；椾期申请设立登记的，申请人应当报审批机关确认原批准文件的效力或者另行报批。申请设立有限责任公司，应当向公司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1）公司董事长签署的设立登记申请书，2）全体股东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证明，3）公司章程，4）具有法定资格的验资机构出具的验资证明，5）股东的法人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6）载明公司董事，监事，经理的姓名，住所的文件以及有关委派，选举或者聘用的证明，7）公司法定代表人任职文件和身份证明，8）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9）公司住所证明。
法律，行政法规规定设立有限责任公司必须报经审批的，还应当提交有关的批准文件。

신원증명，이사•감사•사장의 성명，주소 및 겸직증명，법인대표 재직 증명과 신원증명，상호 사전심사 통지서，영업소 또는 주소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 18 조）．${ }^{60)}$

등기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 여야 하며，설립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로 인해 회사는 성립한다（조례 제22조 제1항）．61）

## 제3절 산업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 1．중화학공업（중공업）

## （1）진출현황 및 향후 전망

중화학공업에는 금속，기계，조선，차량，화학 등 주로 중량이 큰 생 산재를 생산하는 기초적인 공업산업이다．한국의 경우 1970년대 경제 개발계획으로 인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철강，조선，비철금속，기계， 전자，화학공업은 6대 전략산업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 다．62）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13]삼성중공업 닝보조선소,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옌타이조선소, STX 다렌조선, 두산중공업(기계), 포스코(철강), LG 화학 등이 있다.

한국 중화학공업의 대중국진출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해 왔던 종래의 투자목적과 달리 중국에서 최종 소비재를 판매하는 내수 시장 개척에 목적이 있다. ${ }^{63)}$ 그러나 중국은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실현 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11차 5개년계획(2006~2010)부터 중화학공업화 를 강력히 추진해왔으며 특히, 자동차•선박•기계 등 중공업을 집중 적으로 육성하였다. ${ }^{64)}$ 현재 석유•철강•화학 등 중화학공업분야는 국 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산업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참여 가 활발하다.65) 2011년 개정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자동차제조 업은 격려산업 유형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부품제
63) 한홍석, 한국기업, 中 내수시장 개척은 선택 아닌 필수과제, 한국경제, 2012년 8월 19 일 기사 내용 참조(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1 990571, 2012년 8월 29일 방문).
64) 중국이 2000 년대 들어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경기 사이클의 효과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은 내수경 기가 극도로 침체했고, 이 때문에 주로 내수산업인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수출산업 인 경공업이나 전자산업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전통적 중화학 부문 에 대한 투자는 수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극도로 부진해 생산능력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내수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서 철강, 화학 등 중화학 소재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들 부문의 이익이 급증함에 따 라 다시 대대적인투자 붐이 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 로 들 어갈 때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 대한 최근의 대대적인 투자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실 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중화학 투자 붐을 단지 경기호황 탓 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경제발전에 수반되게 마련인 수요구조의 장기적 변화가 산 업구조의 고도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득수준 향상과 주택제도 개혁으로 1990년대 말 이후로 주택건설 붐이 지속되고 있고, 자동 차 대중화 준비단계에 들어서면서 승용차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 인프라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데다, 서부 대 개발,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는 곧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중화학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지만수, 최의현, 이남주, 김희진, 백권호,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5-18,2005$ 년, 113 면).
65) 노형진, 중국산업의 고도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한국컴퓨터정보학 회 논문지 제 12 권 제 2 호, 2007년, 256면.

조업을 격려산업으로 새로이 추가하였다．이에 따라 일반자동차를 생 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축소되고，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지원 우대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66)}$

## （2）시장진입조건

중국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해 왔으며， 2009년부터 세계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1 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 년까지 3 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생산 및 판매 시장이다．67）현 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68）을 중심으

66）谭宝玲，中国限制外商投资汽车制造 鼓励新能源车，大洋网－大洋汽车，2012年1月4日，新闻正文（http：／／life．dayoo．com／auto／201201／04／111151＿21349709．htm，2012월 8월 29일 방문）。
67）김근정，중 자동차 생산－판매량 3 년 연속 세계 1 위，2012년 7월 25 일 아주경제 기 사내용 참조（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725000035，2012년 8월 24일 방문）．
68）현대자동차그룹은 베이징현대（北京現代），화타이현대（笨城華泰汽），동평위에다기아 （東風悅達起亞），현대모비스 등으로 구성된다．아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국내 자 동차 및 엔진생산 거점에 대한 소개이다（Fourin，現代•起亞自自動車中國 100 万台販賣體制に現地開發と部品調達能力を强化，中國自動車調查月報，2008년 보고서 내용 참조）．
［표 2］현대자동차그룹의 중국내 자동차 및 엔진생산 거점 및 투자방식

| 거 점 |  | 설립가동 | 소재지 | 출자비율 |
| :---: | :---: | :---: | :---: | :---: |
| 北京現代 | 1공장 | 2002.10 | 북경시 | 현대차 $50 \%$ ，북경기차 $16.38 \%$ ， 수도강철 33．62\％ |
|  | 2공장 | 2008.5 |  |  |
|  | 1 엔진공장 | 2004.4 |  |  |
|  | 2엔진공장 | 2007.9 |  |  |
| 東風悅達起亞 | 1공장 | 2002.7 | 강소성 | 기아차 $50 \%$ ，동풍기차 $25 \%$ ，열 달집단 $25 \%$ |
|  | 2공장 | 2007.12 |  |  |
| 威亞汽車發動機 | 2007.2 |  | 산동성 | 현대차 $22 \%$ ，위아 $30 \%$ ，기아차 $18 \%$ ，일조항 $30 \%$ |
| 榮城華泰汽 | 2000.9 |  | 산동성 | 기술 및 브랜드 제공 |

로 자동차부품기자재 생산업체들이 진출되어 있다．선박건조 및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닝보조선소，한진중공업，대우조선해양 옌타이조선소，STX 다렌조선이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와 선박은 교 통•운송수단으로 구분되며 2011년 이전에는 외국인투자 장려산업으 로 구분되었으나 2011년 개정목록에서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의 제조업은 제한되고 있다．따라서 조세우대가 지원되지 않으며，선박건조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도태된 기술이나 공정의 진출 이 금지되고 있다．이처럼 중화학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 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규산 업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철강산업과 화학제조업의 경 우에도 외국인투자자의 선진기술과 공정，신소재를 이용한 제품생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도 대응전략을 변화하고 있는데，LG화학의 경우 2011년 1월 중국 메 이저 자동차그룹인 장안 신재생에너지기차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중 국 전기자동차 배터리시장 공략에 나섰다．${ }^{69)}$

## （3）영업허가규정 및 허가관리절차

## 1）자동차

2012년 8월 31일 현재 자동차제조공장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회사법과 합자 및 합작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요건 및 절차를 적용한다．

[^14]이에 관한 내용은 전술한 회사법과 합자 및 합작기업법의 관련 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2）선 박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선박생산을 막고 기술력과 생산력 제고함으로 써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선박건조 허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중국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COSTIND）는 조선소 설립 에 관한 허가규정 및 절차에 관한＂선박생산허가관리조례（초안）（船舶生产许可管理条例）＂를 발표하였다．이 조례는 현재 의견수렴과정에 있으 며，아직 국무원에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 없다．아래에서는 선박생산허가관리조례（초안）을 바탕으로 허가규 정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건조와 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자하는 자는 선박생산허가를 받아야하며，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선 박의 건조 및 정비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70）벌칙규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처벌을 내리 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건조 및 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선 박의 유형•등급•단계에 상응하는 등록자금，영업장소，생산시설，생 산설비，계량기，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하며，규모에 상응하는 기술직• 관리직•생산직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며，기술직 직원은 선박건조 및 정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여야 한다．그밖에 건조된 선박이 국가 산 업계획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생산을 금지하는 도태되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에너지자원을 낭비하는 기 술－공정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71)}$

[^15]71）船舶生产许可管理条例（征求意见稿）第九条：拟从事船舶生产的企业，应当符合下列条

또한 선박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데 1 급 철강을 소재로 선박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소재지 성•자치 구•직할시 선업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심사한 후 국무원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며，기타 선박건조 및 정비사업의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직할시 선업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 한다．${ }^{72)}$

주관부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허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 일 안에 영업허가증을 발급 하며，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영 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10 일 안에 어업행정 주관부처에 등록하여야 하며，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3）철 강

중국 철강산업은 정부재정 투입에 의한 인프라건설 증가로 인해 꾸 준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불합리한 생산구조와 낙후한 생산기술，복잡 한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따라서 정부는 통합과 확대를 통한 대형화，해외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 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73）나아가 철강산업에

[^16]대한 외국자본의 M\＆A를 중국시장에 대한 악의적 시도로 간주하고 이 를 제한하고 있으며，자국기업이 $\mathrm{M} \mathrm{\& A}$ 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74)}$ 그러나 기술과 자금， 선진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철강시장의 통합과정에 참 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유도하고 있다．75） 아래에서는 2009년 12월에 강철산업 발전정책에 의하여 제정된 기존 철강기업의 진입조건 및 관리방법（现有钢铁企业生产经营准入条件及管理办法）${ }^{76)}$ 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강철산업의 진입조건 및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일 반조강 생산 100 만톤 이상，특수조강 생산 50 만톤 이상이어야 하며，외 국인투자자의 경우 독자기업의 설립이 사실상 금지되며，중국 내 기존 의 철강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다 수 지분 확보가 불가능하다．

강철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중국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허 가권자인 산업정보부（工业信息部）에 허가신청서，합자 또는 합작기업 계약서，중국기업 사업자등록증，등록자금，실자본금，주소，투자형태，

급증했으며， 100 만 톤 규모 이상 철강사 생산 비중도＂ 00 년 $83 \%$ 에서 2010년 $54 \%$ 로 하락하였다． 11 차 5 개년계획기간에도 낙후설비 도태를 추진했지만， 2010 년 조강생산 량은 20005년 4．2억 톤에서 $82 \%$ 증가한 7.7 억 톤을 기록하였다．지역별로는 화북지 역의 조강생산설비 비중이 $34 \%$ 를 차지하는 반면 수요 비중은 $15 \sim 20 \%$ 에 불과하며， 화남지역은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다（정철호 외， 12.5 규획기간 중국경제 및 철강산업 의 변화와 시사점，포스코경연연구소 보고서，2011년，6면）．
74）정구현，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사례를 통해 본 전략과 시스템，위즈덤하우스， 2008년，310면；艾家静，中国应严格控制外商投资国内钢铁业，人民网－经济产经版，2006年8月3日（http：／／finance．people．com．cn／GB／1038／4661702．html，2012년 8월 31일 방문）．
75）산업정보부（工業信息部）는 12 차 5 개년계획기간 구조조정을 통한 양적 성장 억제 및 질적 제고 가속화를 철강산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 소 및 공급과잉 억제를 위해 낙후설비 도태와 M\＆A 등을 통해 철강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것을 이번＂철강산업 12 차 5 개년계획＂의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정철호 외，앞 의 글，2011년， 6 면）．
76）기존철강기업 생산경영진입조건 및 관리방법은 현재 의견수렴과정에 있는바，철강 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강산업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성립일자，이사회 구성，회사정관 등 서류를 소재의 산업정보국에 제출 하여 심사 받은 후，산업정보국은 심사 후 신청서류를 산업정보부에 전달하여 산업정보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철강산업협회 는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철강산 업의 신규설립을 제한하고 있는바 최근 3 년에는 신규설립기업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다．${ }^{77)}$

## 2．금융업

## （1）진출현황 및 향후 전망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5 년간의 과도기 개방일정을 제시하고，이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경 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진금융의 관리 및 경험과 경영기술，수준 높 은 서비스의 효율성 및 상업상의 높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78）

은행업의 경우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 등 이 현지법인 형태의 외국은행을 설립하였으며，우리은행은 2009년 5월 한국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직불카드업무를 개시하였다．

증권거래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2002년 12월부터 중국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기관인 QFII （Qualified Foreign In stitutional Investors）가 내국인 투자 전용의 A주를 직접 사들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79)}$ 2003년을 시작으로 2011년

[^17]12 월까지 97 개의 외국투자기관이 QFII 로 지정되었으며，중국 외환관리 국으로부터 승인된 투자한도는 189 억 700만 달러이며 현재 삼성，미래， 한화，동양， KTB 등 8 개 자산운용사와 산업은행，우리은행 2곳이 QFII 로 지정되었다．${ }^{80)}$

## （2）시장진입조건

## 1）증권거래

중국은 WTO 가입 이전까지 전형적인 금융억압정책을 시행해 왔으 며，외국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자본이동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해왔으나，WTO 출범 시 금융개방 및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 여 아래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81）

WTO 가입 즉시 외국계 증권사는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B 주 시장에서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중국에 대표처의 설립과 동시 에 중국증권거래소 특별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또한 외국계 증권사 의 지분참여에 의한 합자펀드관리회사（合资资金管理公司）의 설립이 가 능하며，가입 후 3 년까지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율을 $49 \%$ 까지 확 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12월까지 합자증권회사（合资证券公司）의 설립을 허용하며，중 국의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 주의 위탁판매， B 주， H 주，국채，사 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그밖에 외국계 증권기구의 재 무자문，투자자문 등 금융자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 이득을 달러로 송금할 수 있으나 증권당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 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0）변관열， KTB 자산운용，中 QFII （적격해외기관투자자）자격 획득，한국경제 기사 내 용 참조（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10343956，2012년 9 월 4일 방문）．
81）김은환，중국 법제의 분야별 시리즈（I）중국의 금융법제 연구：중국의 증권거래법 제，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10，2011년，299면．

## 2）보 험

보험업의 경우 WTO 가입 후 3 년 안에 지역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외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단체보험，연급보험 등 다양한 업무 를 취급할 수 있으며，손해보험 등 비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즉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율을 $51 \%$ 로， 2 년 안에 $100 \%$ 지분보유를 허용 하며，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의 취급을 허용한다．

보험중개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입 즉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율 을 $50 \%$ 까지 허용하며，상해•광주•심천•대련•불산 등 5 개 지역에 서의 영업을 허용하며， 2 년 안에 북경•성도•중경•복주•소주•하 문•녕파•심양•무한•천진 등 10 개 지역을 추가로 개방하며， 3 년 안 에 지역제한을 폐지하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율을 $51 \%$ 까지， 5 년 후인 2006년 12월에는 외국인 단독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한다．

## 3）은 행

은행업의 경우 증권거래와 보험업에 비해 시장의 개방정도가 높은데 WTO 가입 합의사항에 의하면，WTO 가입 즉시 외환업무에 대한 거래 지역제한과 외국은행의 고객제한을 폐지한다．82）2001년 WTO 가입 시 상해，심천，천진，대련 등 4 개 지역에 대한 외국은행의 외환업무를 개 방하며，가입 1년 후인 2002년 12월까지 광주，주해，청도，남경，무한 등 5 개 지역을 추가로 개방한다．

인민폐업무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까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인민 폐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2006년 12월 까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은 행업무 취급이 가능하며，중국 전역에서의 은행업무를 개방하여 지역 업무제한을 폐지하였다．

[^18]또한 외국은행의 거래업무도 단순한 대출업무에서 외국신용카드 대 리발행업무，은행카드 발급，화폐태환，콜시장 참여 및 금융파생상품 거래，금융리스업무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동차할부 관련 사업을 허 용하는 등의 거래업무에 대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외국은행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 왔다．${ }^{83)}$

## （3）영업허가규정 및 허가관리절차

## 1）증권거래

중국은 증권거래 및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2002년 6월 1 일 증권감독관리위 원회는 외자참여증권회사설립규칙（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84)}$ 과 외 자참여펀드관리회사설립규칙（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을 입 법화 하였다．

외자참여증권회사（이하＇외자증권회사＇라 칭함）란 외국인투자자와 중 국 증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합자회사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증권사의 지분을 인수－매입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규칙 제2조）．${ }^{85)}$ 외자증권회사의 명칭，기업형태，등록자본，조직구성 및 직책 은 회사법과 증권법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 야 한다（규칙 제4조）．86）

83）이정표，앞의 글， 226 면．
84）본 규칙은 2002년 6월 1일 증권감독위원회 제8호로 제정되었으며，2007년 12월 28 일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총 29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증권시장의 대외개방에 대 응하고 중외합자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중외합자증권회 사의 설립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규칙 제1조 입법목적）．
85）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第二条：本规则所称外资参股证券公司是指，1）境外股东与境内股东依法共同出资设立的证券公司，2）境外投资者依法受让，认购内资证券公司股权，内资证券公司依法变更的证券公司。
86）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第四条：外资参股证券公司的名称，组织形式，注册资本，组

외자증권회사는 증권법 제 125 조，제 127 조에 따른 등록자본액을 필요 로 하며，87）본 규칙에서 정하는 출자비율88）과 출자방식에 부합되어야 하며，증권업종사자자격을 갖춘 자 50 인 이상을 확보하고 회계，법률， 전산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또한 기업의 내부관리시스템과 리스크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증권 중개•매매업무에 관한 경영기술 을 갖추어야 한다．그밖에 영업장소과 증권거래에 관한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규칙 제6조）．${ }^{89)}$

외국인투자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소재국 또는 지역은 건전한 증권 법제와 감독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중국 증권감독위원회와 MOU 체 결 및 협력관계를 맺을 것，소재국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으로 외국인투자자중 최소 1 인은 금융업무경영자격을 갖춘 금융기 구이어야 하며，지분 참여한 날로부터 3 년 내에 지분을 양도할 수 없

[^19]87）증권법 제 125 조와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 중개업，투자자문，증권거래 및 증권 투자에 관한 재무고문을 영업범위로 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등록자본이 5000 만 위안 이상일 것，증권매매와 자기거래，증권자산관리，기타 업무 중 하나를 영업범 위로 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등록자본이 1 억 위안 이상일 것，증권매매와 자기 거래，증권자산관리，기타 업무 중 두 개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5 억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이 필요하다（证券法（2006）第一百二十五条：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批准，证券公司可以经营下列部分或者全部业务，1）证券经纪，2）证券投资咨询，3）与证券交易，证券投资活动有关的财务顾问，4）证券承销与保荐，5）证券自营，6）证券资产管理， 7）其他证券业务。
第一百二十七条：证券公司经营本法第一百二十五条第1）项至第3）项业务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人民币五千万元，经营第4）项至第7）项业务之一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人民币一亿元，经营第4）项至第7）项业务中两项以上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人民币五亿元。证券公司的注册资本应当是实缴资本）．
88）외자참여증권회사설립규칙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율은 총 지분의 $1 / 3$ 을 초과할 수 없으며，내국인투자자 중 최소 1 인의 지분참여율은 $1 / 3$ 이상 이어야 한다．
89）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第六条：外资参股证券公司应当符合下列条件，1）注册资本符合证券法的规定，2）股东具备本规则规定的资格条件，其出资比例，出资方式符合本规则的规定，3）按照中国证监会的规定取得证券从业资格的人员不少于 30 人，并有必要的会计，法律和计算机专业人员，4）有健全的内部管理，风险控制和对承销，经纪，自营等业务在机构，人员，信息，业务执行等方面分开管理的制度，有适当的内部控制技术系统，5）有符合要求的营业场所和合格的业务设施，6）中国证监会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으며， 5 년간 지속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최근 3 년간 소재국 또는 지역의 법률상 의무위반 사항이 없을 것，최근 3 년간 각종 재무상태 지표가 소 재국 또는 지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완벽한 내부통제제도와 양호 한 신용과 경영실적을 거두어야 한다（규칙 제7조）．90）

상술한 설립요건을 갖춘 자는 허가신청서，외자증권회사 설립에 관 한 계약서 및 회사정관，고급관리인원의 자격요건 설명서，출자자의 사 업자등록증 및 증권업자격증，신청일 기준 3 년 전 재무보고서，외국인 투자자 소재국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기관（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기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설립，재무상태 지표，법률위 반 사항에 관한 사유서，중국 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법률의견서 및 기타 서류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12조）．91）

증권감독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허가여 부를 결정하며，허가를 받은 자는 6 개월 안에 모든 출자금을 완전 납 부하거나 약정한 합자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이사•감사•고급관리 인원을 임명하여야 하며，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등록을 신 청해야 한다（규칙 제 13 조，제 14 조）．외자합자증권사의 이사 또는 대표

[^20]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5 일 안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에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정관，증권업취급에 관한 자격증명서 및 자 산증명서，영업장 및 증권거래에 사용될 설비에 관한 설명서 등 서류 를 증권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증권업경영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 다．증권감독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 일 안에 발급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규칙 제 15 조，제 16 조）．${ }^{92)}$

## 2）보 험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시장에 진입하려면 우선 기업형태에 따라 진입 요건이 다르다．대표처（代表机构）를 설립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 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보험회사의 설립에 관한 주중국 외국보험기구 대표처 관리방법（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에 의한다．그러나 대표처는 직접투자를 하기 전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시 장조사 및 참여업체와의 연락，법률자문 등 비영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보험업무 경영은 금지된다（관리방법 제2조 제2항）．${ }^{93)}$

외국보험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보험회사관리조례（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가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조례의 규정에 따라 외 국보험회사는 중국기업과 합자 또는 합작회사，외국인 단독회사의 설 립이 가능하다．또한 2 억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이 필요하며（관리조례 제7조），${ }^{94)}$ 보험업 운영경력이 30 년 이상，중국 내에 대표처 설립 경력

[^21]2년이 이상，전년도 자산총액이 50 억불 이상，소재국 또는 지역에 보 험감독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당해 외국보험회사가 소재국 또는 지역 주무관청으로부터 유효한 감독을 받고 있을 것，소재국 또는 지역의 지급여력기준에 부합할 것，소재국 또는 지역의 감독당국이 그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것，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관리조례 제8조）．95）

상술한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신청서，소재국 또는 지역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지급여력에 관한 증명서류，회 사정관，최근 3 년간 기업연차보고서，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계약서 및 중국기업의 관련 제출서류，법인설립업무 담당자 신원증명 서류，보험감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보험감독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하며（관리조례 제9조），96）보험감독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제출서류에 대해 간이심사를 수행하여 신청서 접 수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은 보험감독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법인설립업무를 완료해야하며，기간 내에 설립업무를 수행하지 못하

险公司，独资保险公司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 2 亿元人民币或者其等值的自由兑换货币，其注册资本最低限额必须为实缴货币资本。外国保险公司的出资，应当为自由兑换货币）。
95）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第八条：申请设立外资保险公司的外国保险公司应当具备下列条件，1）经营保险业务30年以上，2）在中国境内已经设立代表机构2年以上， 3）提出设立申请前 1 年年末总资产不少于 50 亿美元，4）所在国家或者地区有完善的保险监管制度，并且该外国保险公司已经受到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的有效监管，5）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偿付能力标准，6）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同意其申请，7）中国保监会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96）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第九条 设立外资保险公司，申请人应当向中国保监会提出书面申请，并提交下列资料，1）申请人法定代表人签署的申请书，其中设立合资保险公司的，申请书由合资各方法定代表人共同签署，2）外国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核发的营业执照（副本）对其符合偿付能力标准的证明及对其申请的意见书，3）外国申请人的公司章程，最近3年的年报，4）设立合资保险公司的，中国申请人的有关资料，5）拟设公司的可行性研究报告及筹建方案，6）拟设公司的筹建负责人员名单，简历和任职资格证明，7）中国保监会规定提供的其他资料。

는 경우 보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 개월 연장할 수 있다．연장 기간 안에 설립업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감독위원회의 법인설 립 신청서류 접수는 자동으로 무효 된다．

한편 법인설립업무를 완료한 신청인은 설립 준비보고서，회사 정관， 투자자와 출자액，자본금 납부증명서，회사 책임자의 위임장，고급관리 직 명단•이력서•자격증명서， 3 년간 회사운영계획과 재보험 방안，보 험 상품의 보험계약서•보험비율•책임준비금의 계산 설명서，영업장 소와 설비，합자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서，기타 서류를 보험감독위원회 에 제출하여 심사받는다（관리조례 제11조）．97）

보험감독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 설립 최종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 터 60 일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게 영업허 가를 발급하며，허가를 받은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자등록 신 청을 하여야 한다．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서면으로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관리조례 제12조）．98）

97）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第十一条：申请人应当自接到正式申请表之日起 1年内完成筹建工作 ；在规定的期限内未完成筹建工作，有正当理由的，经中国保监会批准，可以延长 3 个月。在延长期内仍未完成筹建工作的，中国保监会作出的受理决定自动失效。筹建工作完成后，申请人应当将填写好的申请表连同下列文件报中国保监会审批， 1）筹建报告，2）拟设公司的章程，3）拟设公司的出资人及其出资额，4）法定验资机构出具的验资证明，5）对拟任该公司主要负责人的授权书，6）拟设公司的高级管理人员名单，简历和任职资格证明，7）拟设公司未来 3 年的经营规划和分保方案，8）拟在中国境内开办保险险种的保险条款，保险费率及责任准备金的计算说明书，9）拟设公司的营业场所和与业务有关的其他设施的资料，10）设立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其总公司对该分公司承担税务，债务的责任担保书，11）设立合资保险公司的，其合资经营合同，12）中国保监会规定提供的其他文件。
98）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第十二条：中国保监会应当自收到设立外资保险公司完整的正式申请文件之日起 60 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颁发经营保险业务许可证，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经批准设立外资保险公司的，申请人凭经营保险业务许可证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登记，领取营业执照。

## 3）은 행

중국에서 외국계 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외자은행관리조례 （外资银行管理条例）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한다（관리조례 제7조）．${ }^{99)}$ 외국계 은행에는 독자기업，중국은행과의 합자투자 형태로 설립된 합자기업，외국계 은행 지점 및 사무소가 있다．독자•합자기업 의 등록 자본금은 10 억 위안 또는 등가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한 화 폐이며，등록자본금은 회사의 실질적 자본으로서 주주가 실제로 납입 한 자본금（实缴资本）이여야 한다．또한 중국 내에서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본점은 무상으로 1억 위안 이상의 인민폐 또는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등가의 화폐를 운영자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관리조례 제8조 제1항，제2항）．100）

독자은행，합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수익성 확 보가 가능하며 양호한 신용과 중대한 법률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외 국계 독자은행의 주주，합자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지점 및 대표처의 외국인 주주는 글로벌 금융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 며，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反洗钱制度）를 마련해야 한다．나아가 외국계 은행 소재국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관리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이여야 하며，소재국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관리기관의 해외투자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관리조례 제9조）．${ }^{101)}$

[^22]그러나 독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은행으로，외국인 투자자는 중국내에서 대표처를 설립한지 2년 이상，설립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 총자산이 100 억 달러 이상，자기자본비율（资本充足率）이 소재국 또는 지역의 은행감독관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관리조 례 제 10 조）．${ }^{102)}$ 합자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 대표처 설립을 요하는 반면에 2 년 이상 존속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그 외의 요건은 독자 기업과 동일하다（관리조례 제11조）．

외국계 은행이 중국내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반면에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총자산이 200 억 달러 이상이여야 한다（관리조례 제12조）．

상술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법인설립 신청서，타당성 연구보고서， 회사정관，합자은행의 경우 계약서，이사회 구성 및 조직도，주주 명단 및 해외지점 리스트，최근 3 년의 기업연차보고서，자금세탁방지제도，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감독기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금융업 경영허가서류 등을 소재지 은행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며，은행감독관 리기관은 간이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관리조례 제 14 조）．${ }^{103)}$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

[^23]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설립준비 승인여부를 결정하며，신청자는 승 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설립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은행감 독관리기관은 영업개시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 2 개월 안에 영업허가여부를 결정한다．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공상행 정관리기관에 사업자등록 신청한다（관리조례 제 15 조～제 18 조）．

## 3．건설업

## （1）진출현황 및 향후 전망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건설시장 규모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4)}$ 특히 WTO 가입 후 외국자본 유치，2008년 베이징 올 림픽 개최，서부지역개발과 교통•주택•산업기지 등 사회기반시설 조 성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해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는데， 2011년에는 신규 건축사업에 1조 달러의 금액을 투입하여 미국을 제치 고 세계최대의 건축 대국으로 부상하였다．2012년 8월 현재 세계 건설 시장의 약 $14 \%$ 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세계 건설시장의 $20 \%$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장규모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05）

[^24]한국과 중국은 1996년 5월 건설부문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한중건설 협력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이후에는 서울，부산，인천 등 지방자치단 체에서 중국의 북경，상해，천진시 건축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 다．${ }^{106)}$ 현재 LG 건설과 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그룹계열 건설사와 우림건설， SR 개발，우남건설 등 중견기업 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

## （2）시장진입조건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가입 즉시 외국인투자자의 다수 지분 보유를 허용하며，합자기업의 자본금 등록기준도 중국기업 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2004년 12월까지 외국인 단독 투자 건축회사 의 설립을 허용한다．${ }^{107)}$ 또한 중국기업과의 합자기업 설립도 허용되는 데 중국기업의 지분참여비율을 $25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외국인투 자 건축기업 관리규정 제12조）．${ }^{108)}$

## （3）영업허가규정 및 허가관리절차

중국 건설부는 건축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지원 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에 외국인투자 건축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을 제정하였다．109）

Financial Times March 2，2011s（http：／／www．ft．com／cms／s／0／f9c3e0ca－44ed－11e0－80e7－001 44feab49a．html\＃axzz25Y6IbmEk）．
106）교류협력 양해각서는 대한건설협회와 중국건축업협회가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 결하였다．1999년 3월에는 대한건축협회 서울시회와 인천시회가 북경건축연합회와 천 진건축연합회와，4월에는 부산시회가 상해건축연합회와 각각 자매결연을 통하여 활발 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07）中国入世承诺表，建筑业，入世后将允许外资在合资企业中占多数股权，三年内将允许成立外国独资企业。
108）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第十二条：中外合资经营建筑业企业，中外合作经营建筑业企业中方合营者的出资总额不得低于注册资本的 $25 \%$ 。
109）본 관리규정은 건축법，입찰법，합자기업법，합작기업법，외국인투자기업법，건축

본 관리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등급 및 유형별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글로벌 컨트랙트（施工总承包），전문하청 공정（专业承包），건설단순노무（劳务）로 구분하여 등급별 허가신청기관 을 달리하고 있다．
［표 3］건설사업 등급 및 유형별 허가신청기관

| 등급 및 유형 | 회사설립 및 영업허가 | 건축취급자격 |
| :---: | :---: | :---: |
| 글로벌 컨트랙트 특급 |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 | 국무원 건설부 |
| 글로벌 컨트랙트 1급 |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 | 국무원 건설부 |
| 전문하청공정 1 1 급 |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 | 국무원 건설부 |
| 글로벌 컨트랙트 2~3급 | 성－자치구－직할시 <br> 대외무역경제국 | 성－자치구－직할시 건설청 |
| 전문하청공정 2～3급 | 성－자치구－직할시 <br> 대외무역경제국 | 성－자치구－직할시 건설청 |
| 건설단순노무 1～2급 | 성•자치구•직할시 대외무역경제국 | 성•자치구－직할시 건설청 |

출처：외국인투자 건설기업 관리규정 제6조 내용 참조．${ }^{110)}$
따라서 외국인투자 건축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신 청서，타당성 연구보고서，합자 또는 합작기업의 경우 계약서，회사정

[^25]관，상호 승인서，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증명서，대표이사•이사회 구 성원•사장•기술담당자 신원증명서，최근 3 년간 자산부채표 및 소득 계산서 등 서류를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관리규 정 제 10 조）．${ }^{111)}$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대외경제무역국은 신청서 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안에 간이심사를 완료하여 국무원 대외경제 무역부에 제출하며，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 터 10 일 안에 건설부와 협의한다．건설부 의견검토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 일 안에 허가결정을 내린다．허가를 받은 자는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사업자등록 신청한다（관리규정 제7조）．${ }^{112)}$

## 4．물류산업（유통，운송）

## （1）진출현황 및 향후 전망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고，2001년 WTO 가입으로 물류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 었다．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되고 외국자본 의 유입으로 이후 중국의 물류산업은 규모나 기술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6]한국기업들이 중국에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제조업이며，이와 관 련된 유통업，운송 및 물류로서 전체 서비스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10 년에 각각 $36.2 \%, 18.0 \%$ 에 달하였다．이는 한국 물 류시장의 협소성과 포화상태에 이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잠재적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이며，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 는 중국진출을 고려하게 되었다．${ }^{113)}$

시장진입의 초기단계에는 많은 물류기업들이 한국 제조업체의 중국 현지 물류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진출의 첫출발을 하였고，중국진출 한 국 제조업체들이 북경，천진，청도 등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 계로 물류기업도 이들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114)}$

한국 물류기업의 중국 직접투자는 1990년부터 시작되어 2008년 총 134 개 현지법인 및 2 개 지점과 27 개 지사가 설립되었다．대표적인 기 업으로는 한진해운，대한통운，삼성 Logistics China，범한판토스，현대 택배，대한항공 등 있으며，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도 진 출하였다．중국은 한국 최대무역교역국이자 세계 최대수출국으로 무 한한 잠재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이로 인해 많은 물류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115）
（2）시장진입조건

## 1）운 송

운송업은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육상운송과 해상운송，항공운송으로 구분된다．운송업과 관련하여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도로운

[^27]송조례（道路运输条例），도로화물운송 및 터미널관리규정（道路货物运输及站场管理规定），도로여객운송 및 터미널관리규정（道路旅客运输及客运站管理规定），철도법（铁路法），철도운송안전보호조례（铁路运输安全保护条例），외국인투자 철도화물운송 심사비준에 관한 잠정방법（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业审批与管理暂行办法），민간항공법（民用航空法），외국인투자 민 간항공업규정（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공공항공운송영업영허가규정 및 관리절차（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规定及管理程序）등의 특별 법이 많 으며，이에 대한 행정적 감독규제가 엄격하다．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의하면 도로화물운송은 격려하나 도로여 객운송은 제한한다．116）산업구조조정목록에서도 도로컨테이너 및 박스 형 운송업의 투자를 적극 격려하고 있다．${ }^{117)}$ 그러나 국내 수로운송시 장은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중국의 WTO 가입조건에도 이에 대한 언 급이 전혀 없다．118）

도로운송업에 종사하려면 투자자 중 일방은 중국 역내에서 5년 이상 해당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외국투자자가 차지하는 지분 은 $49 \%$ 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회사 등록자본의 $40 \%$ 는 여객운송기 반시설 건설과 개조에 사용되어야 하며，사용차량은 중급이사의 여객 차여야 한다．119）

철도운송의 경우에는 2001년 WTO 가입 시점부터 외국인 투자 합영 기업 120 ）이 국내의 철도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것을 허가하고，가입 3

[^28]년 후（2004년 12월 11일）부터는 외국인투자자가 과반수 지분을 점유하 도록 허용하며，가입 6년 후（2007년 12월 11일）부터는 외국기업이 단 독으로 철도화물운송기업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121）여객운 송과 관련하여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제한 을 두고 있다．${ }^{122)}$

합영회사의 외국인투자자는 화물운송업을 10 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자본금을＂비교적（比较的）＂많이 보유하여야 한다． 중국 투자자 또한 10 년 이상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철도운송회사여야 한다．최저 등록자본금은 2,500 만 달러이며，영업규모에 상응하는 운송 차량과 기타 설비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23)}$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중국 WTO 가입 양허에 의하면 중외합자항공 기정비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 투자자가 다수의 지분을 점유하거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4)}$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및 산업구조조정목록에서 항공운송업의 격려한다는 규 정과 함께 중국 투자자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5)}$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3 대 이상의 민간항 공기를 확보（구매•임대）하여야 하며，경영관리 책임자는 공공항공운송 기업 관리능력을 갖추어야하며，항공기 조종사•정비사，기타 안전운행 에 필요한 전문직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한다．또한 운행에 필요한 비 행장，영업장소 및 시설이 필요하며，등록자본금은 8,000 만 위안 이상 이어야 한다．${ }^{126)}$

> 년, 5면).

121）WTO 가입의 정서 부록 9의＂중화인민공화국 서비스무역 양허안＂제 11 유형 운 송서비스에 관한 내용 참조．
122）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외상투자제한성 산업목록 제5유형 제4항，제5항．
123）외국인투자 철도화물운송 심사승인과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제5조，제6조．
124）WTO 가입 의정서 부록 9 의＂중화인민공화국 서비스무역 양허안＂제 11 유형 제D항．
125）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외국인 투자 고무격려유형 산업지도목록 제6유형 제 6항，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05），고무격려유형 제23유형．
126）민간항공법 제 93 조，공공항공운송업영업허가규정 제 7 조．

## 2）유 통

유통업이란 생산자와 사용자의 중간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업종을 말한다．이 에는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포함된다．${ }^{127)}$ 중국에 진출한 대규모 유통기 업으로는 매가마트，이마트，신세계백화점，제일모직，빅마트가 있다．128）
중국 WTO가입 양허안에 의하면 도매업은 가입 후 2 년 내 외자 다 수지분 보유를 허용하며， 3 년 이내에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설립을 허 용한다．나아가 지역제한 및 규모에 대한 제한은 가입 후 2 년 내에 철 폐하도록 한다．소매업의 경우 가입 후 2 년 이내에 외자 다수지분 보 유， 3 년 내 외국인투자비율 제한 폐지，WTO 가입 전에는 연해 11 개 도 시에서만 영업이 허가되나 가입 시에는 2 개 도시를 추가로 개방하며， 가입 후 2 년 내에 모든 성소재지 및 중경시，녕파시 추가로 개방하기 로 한다．${ }^{129)}$

2004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130)}$ 은 유통산업을 외국인투자 상업기업（外商投资商业企业）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개（佣金代理），도매（批发），소매（零售），프랜차이징 （特许经营）으로 분류하고 있다．${ }^{131 \text { ）}}$

127）네이버 지식백과 유통업에 관한 정의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284787\＆mobile\＆categoryId＝2897，2012년 8월 27일 방문）．
128）신세계백화점이 1996년 2월 1일 한국유통업의 중국진출 첫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1997년 신세계그룹 산하의 이마트가 상해에 할인점을 설립하였다．
129）WTO 가입의정서 부록 9 의＂중화인민공화국 서비스무역 양허안＂제 11 유형의 내 용 참조．
130）2004년 4월 9일 상무부 제6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2004년 상무부령 제8호로 공포 되어 동년 6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이법은 유통시장체계를 구축하고 개방의 범위 를 확대하고자 합자경영기업법，합작경영기업법，외국인투자기업법，회사법에 근거 하여 제정되었다．
131）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第三条：外商投资商业企业是指从事以下经营活动的外商投资企业。1）佣金代理：货物的销售代理商，经纪人或拍卖人或其他批发商通过收取费用在合同基础上对他人货物进行的销售及相关附属服务，2）批发：对零售商和工业，商业，机构等用户或其他批发商的货物销售及相关附属服务，3）零售：在固定地点或通

이 방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유통업을 경영하고자 하 는 경우 신용이 양호하고 중국에서의 법률위반행위가 없어야 하며，경 제력이 강한 외국기업으로 훌륭한 경영•판매기술과 글로벌 판매 네트 워크를 구축한 기업이여야 한다．132）또한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최저등록자본금은 소매업 30 만 위안，도매업 50 만 위안이며， 영업기간은 30 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기간을 40 만 미만 으로 규정하고 있다．${ }^{133)}$

그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점포 규모 및 수량，종업원，도시계획 에 관한 규정，직판관리조례에 의한 방문판매에 관한 허가 규정을 두 고 있다．

## ＜그림 1＞도로운송회사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설립



过电视，电话，邮购，互联网络，自动售货机，对于供个人或团体消费使用的货物的销售及相关附属服务，4）特许经营：为获取报酬或特许经营费通过签订合同授予他人使用其商标，商号，经营模式等。
132）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第六条：外商投资商业企业的外国投资者应有良好的信誉，无违反中国法律，行政法规及相关规章的行为。鼓励具有较强的经济实力，先进的商业经营管理经验和营销技术，广泛的国际销售网络的外国投资者举办外商投资商业企业。
133）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第七条：外商投资商业企业应当符合下列条件。1）最低注册资本符合公司法的有关规定，2）符合外商投资企业注册资本和投资总额的有关规定，
3）外商投资商业企业的经营期限一般不超过 30 年，在中西部地区设立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期限一般不超过 40 年。


출처：전인철，앞의 글， 43 면，＜그림 2－6＞도로운송회사설립절차 참고하여 작 성함．

## （3）영업허가규정 및 허가관리절차

## 1）도로운송

도로운송조례（道路运输条例）${ }^{134)}$ 제23조 내지 제28조의 도로운송업 영업허가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 및 설비，운전면허가격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하며，안전운행 관리•감독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135)}$

134）도로운송조례는 국무원령 제406호로 제정되었으며，2004년 4월 14일 국무원 제48 차 국무회의 통과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35）道路运输条例 第二十二条：申请从事货运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1）有与其经营业务相适应并经检测合格的车辆，2）有符合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条件的驾驶人员，3）有

이법 제 23 조는 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을 취득한 60 세 이하의 자로，화물의 운전•집화•하역•관리를 담당 하는 자는 행정구역 구（區）를 설립한 시136）의 도로운송관리 주관부처 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7)}$
나아가 위험물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운송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용차량 및 설비를 5 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운 전자•하역•관리원은 소재지 교통주관부처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운송차량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건전한 안전운행 관리•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38）

운송관리 주관부처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도로운송영 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운영할 차량에 대해 차량운영증을 발급한다．불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서면으로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야 한다．도로운송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도로운송조례 제25조 제2항）．${ }^{139)}$

## 2）철도운송

외국인투자자가 철도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 자 철도화물운송 심사승인 및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外商投资铁路货

## 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136）중국 행정구역 구는 한국에서의 자치구와 행정구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137）道路运输条例 第二十三条：从事货运经营的驾驶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1）取得相应的机动车驾驶证，2）年龄不超过 60 周岁，3）经设区的市级道路运输管理机构对有关货运法律法规，机动车维修和货物装载保管基本知识考试合格。
138）道路运输条例 第二十四条：申请从事危险货物运输经营的，还应当具备下列条件。1）有 5 辆以上经检测合格的危险货物运输专用车辆，设备，2）有经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考试合格，取得上岗资格证的驾驶人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3）危险货物运输专用车辆配有必要的通讯工具，4）有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139）道路运输条例 第二十五条 第二款：依照前款规定收到申请的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 20 日内审查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道路运输经营许可证，并向申请人投入运输的车辆配发车辆营运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物运输审批与管理暂行办法）의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 그 외에도 합자기업법，합작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방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 회사설립의 경우 합자기업과 합작기업 2 가지 형태를 허용하고 있으나（방법 제2조），${ }^{140 \text { ）이 방법은 2000년에 제 }}$ 정된 법률로 WTO가입 양허안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외국인의 $100 \%$ 단독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WTO 가입이 합의사항의 이행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철도화물운송회사 설립에 관한 허가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
 （방법 제3조）．${ }^{142)}$ 외국인투자자는 10 년 이상 화물운송업 경력을 가진 자금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회사이여야 한다．합자 또는 합작회사의 경 우 중국 투자자 또한 10 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가질 것을 요한다（방 법 제5조）．${ }^{143)}$ 나아가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운송차량과 기타 장치，영 업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거래처와 전문인력과 관리원을 확보 하여야 하며，최저 자본등록금이 2,500 만 달러이다（방법 제6조）．${ }^{144)}$

140）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审批与管理暂行办法 第二条：外国投资者以合营方式（包括合资，合作两种方式）在中华人民共和国设立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适用本办法。
141）외경부는 대외무역과 경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원소속의 중앙부처 이다．한국과 달리 중국은 통상과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처로 각각 외경부 와 외교부를 설립하고 있다．
142）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审批与管理暂行办法 第三条：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以下简称外经贸部）和中华人民共和国铁道部（以下简称铁道部）负责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的审批。
143）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审批与管理暂行办法 第五条：设立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外国主要投资者应是从事货运业务 10 年以上的货物运输公司，并具备较强的资金实力和良好的经营业绩。中方主要投资者应是从事货运业务10年以上的铁路运输企业。在中国政府规定期限内，中方投资股比不低于 $51 \%$ 。
144）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审批与管理暂行办法 第六条：设立的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应符合下列条件，1）拥有与经营规模相适应的货运车辆和其他运载工具，拥有办理铁路货运业务所必需的场地，设施，2）具有稳定的货源，3）具有从事经营业务所需要的专业技术和管理人员，4）注册资本额应满足从事业务的需要，最少不得低干 2500 万美元。

상술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타당성 연구보고서，회사정관，합자 또는 합작기업의 경우 계약서，신 원증명서，이사회 구성，기타 외경부 및 철도부에서 요하는 서류를 철 도부에 제출해야 한다（방법 제7조）．철도부는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투자액이 3,000 만 달러 이상인 경우 철도부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한다．철도부가 이를 심 사한 후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철도화물운송경영허가증（铁路货物运输经营许可证）을 발급하며，외경부는 철도화물운송경영허가증과 합자 또는 합작기업 계약서，회사정관을 심사한 후 외국인투자자기업 승인을 결정하며，승인을 받은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45)}$

이 방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합자 또는 합작의 경우，회사설립계 약서의 계약기간을 20 년 미만으로 하되 철도노선 및 시설의 건설 현황 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당사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주관부처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146)}$

## 3）항공운송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항공운송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외국인투자 민간항공산업규정，민간항공법，공공항공운송업 영업

145）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审批与管理暂行办法 第八条：申请设立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按以下程序办理，1）申请者向铁道部提出本办法第七条规定的全部文件。铁道部自接到全部文件之日起， 2 个月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投资规模 3000 万美元及其以上项目，由铁道部转报国家发展计划委员会审批立项。经审查符合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设立要求并批准立项的，由铁道部核发铁路货物运输经营许可证，2）申请者通过铁道部将合营合同和章程转报外经贸部审批。申请者凭批复文件在外经贸部办理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3）申请者凭铁路货物运输经营许可证，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在规定的期限内，依照公司登记的有关规定，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企业注册登记，4）中外台营铁路货运公司需要在国内，国外和港澳地区设立分支机构的，应报铁道部和外经贸部批准。
146）外商投资铁路货物运输审批与管理暂行办法 第十条：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的经营期限由中外合营双方在合同中约定，一般不得超过 2 O 年。出资建设或购头线路和站场设施的中外合营铁路货运公司的合营期限可适当延长。合营期满后，中外合营双方经协商同意继续经营的，应当报经原审批机关批准。

허가규정 및 허가관리절차，민간항공운송기업 심사비준권한에 관한 국 무원의 잠정방법의 적용을 받는다．아래에서는 외국인투자 민간항공산 업규정147）과 공공항공 운송업에 관한 영업허가규정과 허가관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신규설립보다는 합자 또는 합작기업의 설립，지분인수 등 방법을 통한 기존의 항공운송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 자를 격려한다．외국인투자 민간항공사업에 관한 규정 제2조（영업범위） 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는 민간공항，148）공공항공 운송회사，범용항공 （通用航空）및 기타 항공운송에 관한 사업149）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통제시스템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운영은 금지한 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150)}$

민간공항 설립 시 중국투자자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며，외국 인투자자의 지분 보유량은 $25 \%$ 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농업•임 업•어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보유하는 범용항공사업의 경우 중국기 업이 다수지분을 보유하며，외국인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항공연료 및 화물보관，지상서비스，항공식품， 주차장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규정 제6조）．${ }^{151)}$ 합

147）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은 2001년 12월 10일 민간항 공총국，외경부，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2002년 6월 21일에 국무원이 승 인하여，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본 규정은 민간항공사업의 개방을 확대하 고 항공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자기 업법，합작기업법，외국인투자지도방향규정，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및 민간항공 산업에 관한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해 제정되었다．
148）민간공항은 비행구역과 공항청사가 포함되며，비행구역은 활주로，유도로，착륙 대，항공보조조명 등을 포함한다．
149）항공운송에 관련한 기타 사업에는 항공연료，항공기 정비，화물보관，지상서비 스，항공식품，주차장 및 기타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 등이 있다．
150）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第三条：外商投资民航业范围包括民用机场，公共航空运输企业，通用航空企业和航空运输相关项目。禁止外商投资和管理空中交通管制系统。
151）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第六条：外商投资民用机场，应当由中方相对控股。外商投资公共航空运输企业，应当由中方控股，一家外商（包括其关联企业）投资比例不得超过 $25 \%$ 。外商投资从事公务飞行，空中游览，为工业服务的通用航空企业，由中方控股；从

자 또는 합영기업의 경우 계약기간은 30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정 제 7조）．${ }^{152)}$

공공항공운송기업 영업허가규정에 따라 상술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 한하여 허가신청서，타당성 연구보고서，회사정관，합자 또는 합 작기업의 경우 계약서，공항매입－임대계약서，활주로확보계약서，제 3 자 책임보험가입증명서，신원증명서，이사회 구성，기타 서류를 소재지 민 항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규정 제21조）．${ }^{153)}$ 민항관리국은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류를 민항총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자 및 국민이 열람하도록 한다．민항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안에 서류심사를 완료하여 민항총국에 보고하며，민항총국은 서류접수 한 날로부터 20 일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허가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안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허가를 받은 자는 공상행 정관리기관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규정 제23조，제24조）．${ }^{154)}$

事农，林，渔业作业的通用航空企业，外商投资比例由中外双方商定。外商投资飞机维修（有承揽国际维修市场业务的义务）和航空油料项目，由中方控股；货运仓储，地面服务，航空食品，停车场等项目，外商投资比例由中外双方商定。
152）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第七条：外商投资的合营企业经营期限一般不超过三十年。
153）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规定 第二十一条：申请人申请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应当提交下列文件，资料一式三份，1）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申请书，2）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复印件，3）企业章程，4）具有法定资格的验资机构出具的验资证明，5）企业住所证明复印件，6）企业标志及其批准文件，7）购买或者租赁民用航空器的证明文件，8）客票，货运单格式样本及批准文件，9）与拟使用的基地机场签订的机坪租赁协议和机场场道保障协议，10）法定代表人，负责企业全面经营管理的主要负责人的任职文件，履历表，身份证复印件，11）投保地面第三人责任险的证明文件，12）企业董事，监事的姓名，住所及委派，选举或者聘任的证明，13）民航总局规定的其他文件，资料。拟设立的中外合资公共航空运输企业，还应当提交合同，章程的批准文件和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154）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规定 第二十三条：申请人申请经营许可，应当将申请材料提交所在地民航地区管理局初审。民航地区管理局收到申请人的申请材料后，将其置于民航总局网站，供申请人，利害关系人及社会公众查阅和提出意见。利害关系人和社会公众如有意见，应当自上网公布之日起 10 个工作日内提出意见。民航地区管理局应当自收到申请人的申请材料之日起 20 个工作日内提出初审意见并连同申报材料报民航总局。
第二十四条 对申请人的经营许可申请没有重大异议的，民航总局应当自受理其申请之日起 10 个工作日内作出准予经营许可的初步决定，并将其置于民航总局网站，供申请人，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규정 제25조）．${ }^{155 \text { ）}}$

## 4）유통업

외국인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 제9조에 따르면 도소매업（상품도소 매，자영상품수입，중국산 제품수출，경매를 제외한 커미션영업，상품 수출입 및 기타관련 업무）을 경영하는 경우，아래（1）과（2）이외의 사항 은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상무부가 인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TV，전화，우편，인터넷，자판기 등을 통한 판매
（2）강철，귀금속，철광석，연료유，천연고무 등 중요 공업원자재 및 본 방법 제 17 조， 18 조에 규정된 상품 ${ }^{156)}$

이 방법 제 10 조 제 1 항의 3）과 4）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성급 행정구 또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내에 유통기업을 개업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의 영업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의 심사를 거쳐 상무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利害关系人及社会公众查阅和提出意见。民航总局应自受理申请之日起 20 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经营许可的决定。
155）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规定 第二十五条：民航总局对准予经营许可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 10 个工作日内，向申请人颁发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对不予其经营许可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 10 个工作日内书面通知申请人，说明理由，并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156）이 방법 제 17 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서，신문，정기간행물，주유소，약품， 자동차 등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특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또한 2004년 12월 11일까지는 외국인투자자의 약품，농약과 농업용 비닐에 대한 경영을 금지하고 있으며，2006년 12월 11일전까지 화학비료 경영을 금 지하고 있다．나아가 외국인투자자의 소금，담배에 대한 경영도 제한하고 있다．제 18 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30 개 이상의 매장을 개설한 경우 도서，신 문，잡지，자동차，약품，농약，화학비료，식용유，양식，식물유，설탕，솜 등 상품을 포 함하여야 하며，상이한 상표와 제공업체에 속할 때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비율을 $49 \%$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단일점포 면적이 $5000 \mathrm{~m}^{2}$ 를 초과하지 않으며，점포수가 3 개미만，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수가 30 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단일점포 면적이 $3000 \mathrm{~m}^{2}$ 를 초과하지 않으며，점포수가 5 개미만，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수가 50 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3）단일점포 면적이 $300 \mathrm{~m}^{2}$ 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는 성급 상무부에 신청서，계약서，투자자가 공 동성명한 타당성 연구보고서，점포 소재지 상무부의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 요구에 부합된다는 증명서류，회계감사보고서，재산평가서， 수출입 상품리스트，이사회 구성 및 위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성급 상무부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 여 상무부에 이송하며，상무부는 3 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불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영업허가 신 청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방법 제11조）．${ }^{157)}$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중국 측과 외국 측 관리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상무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2004년 외국인 유통업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정은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진입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나，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준칙주의가 아닌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별 상황이 상이하여 회사설립에 따른 애로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158)}$

157）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第十一条：投资者应当自收到批准证书之日起一个月内，凭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登记手续。
158）박한진，중국 유통서비스업 개방 약속 이행 현황，KOTRA 경제－산업동향， 2006 년 12월 25일 보고 내용（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Sj9SPyk ssy0xPLMnMz0vM0Y＿QjzKLd4238DED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H m65Gfm6ofpO－tH6BfkBsaGhpR7ggAJHc7jw！！／？id＝2007140\＆workdist＝read）；이희범，KO－ TRA 중국무역관 및 동북아팀，중국의 유통업 진출 가이드：지역별 유통시장 및 신 흥 유통업을 중심으로，KOTRA 산업자원부，2005년，115면．

## 제 4 절 지역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45, 469개, ${ }^{159)}$ 투자금액으로는 $37,466,444$ 천 달러, 신규법인수가 22,175 개로 중국 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160) 지역별 투자현황 을 살펴보면 1 위 산동성 $(16,252$ 건 ), 2 위 요녕성 $(5,130), 3$ 위 강소성 $(4$, 795건), 4위 천진시(4, 229건), 5 위 북경시(3, 466건), 6 위 상해시(3, 451 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금액은 1 위가 강소성 $(8,478,527$ 천 달 러), 2 위 산동성 $(8,430,666$ 천 달러), 3 위 북경시( $4,608,273$ 천 달러), 4 위 요녕성(3, 433, 831 달러), 5 위 천진시(2, 962, 954천 달러), 6 위 상 해시( $2,430,833$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 }^{161 \text { ) }}$

전술한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투자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동성,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동부 연해지역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 3 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 재중조선인 밀집여부, 재한중국인의 연고, 대북한 접촉의 지리적 이점, 지방정부 의 외자유치정책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62) 아래에서는 중국의 정치•문화 중심도시인 북경시와 경제 중심도시인 상해시, 그리고 한
159) 이에는 공동투자건수와 증액건수도 포함된다.
16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한 국가별 해외투자통계자료 참조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nation.jsp, 2012년 9월 5일 방문).
16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한 중국 지역별 투자현황통계자료 참조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nation.jsp, 2012년 9월 5일 방문).
162)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실질투자금액 1 억 달러 이상의 성, 시를 구체적으로 분 석한 결과로써 투자액이 1 억 달러가 넘는 동북 3 성, 환발해만, 화동지역, 광동 등의 지역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 3 성은 요녕, 길림, 흑룡강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써 중 국 동북부에 위치한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역이다. 이 지역은 민족과 언어의 유사성 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2008 년 말까지 한국의 동북 3 성 지역에서의 투자 누계 금액은 29 억 8천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 투자금액의 $11.2 \%$ 를 차지하고 있다(왕잉,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년, 14면).

국기업 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동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허가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북경시

## （1）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허가권한

북경시의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및 북경시 외국인투자 산 업지도 목록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허용•제한•금지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외국인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허가기관을 달 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의 격려 또는 허용산업과 투자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의 제한산 업의 경우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市发展改革委）는 법인설립 허가 신 청서류를 심사한 후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심사를 받도 록 한다．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영업허가기 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이다．${ }^{163 \text {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 만 이하인 제한산업과 3,000 만 달러 이상 1 억 달러 이하의 격려 또는 허용산업，외국인투자금액이 3,000 만 달러 이하인 격력 또는 허용산업 그리고 북경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시발전개혁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며，그 밖의 기타 사항 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 또는 현（縣）인민정부 소속의 발전개혁부처에서 허가권을 가진다．${ }^{164)}$

163）北京市外商投资项目核准暂行实施办法 第四条 第一款：按照国家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分类，总投资（包括增资额，下同） 1 亿美元及以上的鼓励类，允许类项目和总投资 5000 万美元及以上的限制类项目，由市发展改革委对项目申请报告审核后报国家发展改革委核准。
164）北京市外商投资项目核准暂行实施办法 第四条 第二款和第三款：总投资5000万美元以下的全部限制类项目，总投资 3000 万美元及以上至 1 亿美元以下的鼓励类，允许类项目，由市发展改革委核准。

## （2）북경시 외국인투자 심사비준시행방법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설립 및 변경 등에 관한 행정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 하고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자 행정허가법，국무원 투자체제개혁에 관 한 결정（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国发［2004］20号），외국인투자방 향지도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国务院令第346号），외국인투자산업심 사잠행관리방법（外商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国家发展改革委令第22号） 에 근거하여 북경시 외국인투자 심사비준시행방법（北京市外商投资项目核准暂行实施办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북경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북경시 외국인투자 심사비준시행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북경시 발전개혁위 원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한다．사업신청서에는 상호， 영업기한，투자방식，영업장소 및 토지이용，에너지자원이용，환경영향 평가，공공상품 및 서비스상품의 가격，투자금액•등록 자본금•출자비 율 및 방식•융자방안•생산설비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165)}$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안에 사업에 대해 심사•평가하며， 20 일 안에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의견수렴을 실 시한다．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토지이용，품 질관리，자원이용，법인 설립，회사운영 및 생산라인 가동에 필요한 설

[^29]비의 수입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166)}$
이처럼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심사비준 즉 승인 절차는 영업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앙 또는 북경시의 경 제발전계획，도시계획，지역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부합되 는지 여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외국인 직접투 자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행 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청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안 에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사업제안 승인을 받은 자는 타당성 연구보고서 작성，공상행정관리기관에 회사명칭 심사，영업장소 및 설비，원자재，외환수지，법인 인감，회사정관，자산평가 등 서류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허가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허가를 받은 자는 30 일 안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한다．167）

## 2．상해시

## （1）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허가권한

외국인투자금액별 법인설립 허가기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3,000 만 달러를 기준으로 3,000 만 달러 이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허 가여부를 결정하며 3,000 만 달러 이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처 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격

[^30]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해시에서 서 류심사를 통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중앙행정기관에 허가사항에 대 해 신고한다．${ }^{168)}$

그 외에도 자립형 지역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상해시에서 주도하 는 도로，터미널 등 사회기반시설사업과 부동산 건축사업 등 비생산성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상해시에 있다．

## （2）상해시 외국인투자기업허가조례

상해시는 1996년 상해시 외국인투자기업허가조례（上海市外商投资企业审批条例）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영업허가에 관한 공통 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를 지 원하고 있다．

상해시 외국인투자 사업위원회（外国投资工作委员会，이하＇투자위원 회＇라 칭함）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허가업무를 주관하며，푸 둥개발지역 관리위원회（浦东新区管理委员会），외고교보세구역 관리위원 회（外高桥保税区管理委员会），행정구역 ‘구’와 ‘현＇인민정부 및 기타 관 련부처에서 다양한 행정허가업무를 관장한다（조례 제5조）．${ }^{169)}$
합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청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안에 심사

[^31]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사업제안 승인을 받은 자는 타당성 연구보고서，공상행정관리기관에 회사명칭 심사，영업장소 및 설비，원 자재，외환수지，법인 인감，회사정관，자산평가 등 서류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허가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조례 제6조～제12조）．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30 일 안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며，사업등록 을 한 날로부터 30 일 안에 세무，세관，외환관리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조례 제29조）．${ }^{170)}$

## 3．산동성

## （1）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허가권한

산동성의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개혁 및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관한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鼓励）산업，허용（允许）산업，제한（限制）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외국인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허가기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이는 북 경의 외국인투자기업 허가규정과 유사하다．
［표 4］산동성 산업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설립 허가기관

| 구 분 | 외국인투자금액 | 허가기관 |
| :---: | :---: | :---: |
| 격려 또는 허용산업 | 5 억 달러 이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업신청보 <br> 강무부－방셩 옌욱서소고섳）심사 <br> 국무사정권－허ㄴㅏㅏ여붐사 결정（최종） |

170）上海市外商投资企业审批条例 第二十九条中，外方投资者应当在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之日起三十日内，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注册，领取营业执照；营业执照签发的日期，为该企业的成立日期。外商投资企业应当在营业执照签发之日起三十日内，向税务，海关，外汇管理等部门办理有关手续。

| 구 분 | 외국인투자금액 | 허가기관 |
| :---: | :---: | :---: |
|  | 1 억 달러 이상 <br> (증자를 위한 투자 <br> 금액도 포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업신청보 고서 심사(타당성 연구보고서) 상무부-계약서 및 회사정관 심사 |
|  | 3,000 만 달러 이상 <br> (증자를 위한 투자 <br> 금액도 포함) | 산동성 발전개혁위원회-사업신청 보고서(타당성 연구보고서) 심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청-계약서 및 회사정관 심사, 상무부에 신고 <br> * 국가종합발전계획에 관한 격려 산업의 경우 법인설립 허가기 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다. |
|  | 3,000 만 달러 이하 (증자를 위한 투자 금액도 포함) | 관할 시•경제개발구 인민정부 에 허가권의 이양 |
| 제한산업 | 1억 달러 이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업신청보 고서(타당성 연구보고서) 심사 상무부-계약서 및 회사정관 심사 국무원-허가여부 결정(최종) |
|  | 5,000만 달러 이상 <br> (증자를 위한 투자 <br> 금액도 포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업신청보 고서(타당성 연구보고서) 심사 상무부-계약서 및 회사정관 심사 |
|  | 5,000만 달러 이하 <br> (증자를 위한 투자 금액도 포함) | 산동성 발전개혁위원회-사업신 청보고서(타당성 연구보고서) 심 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청-계약서 및 회사정관 심사, 상무부에 신고 |
| 할당제 및 허가증 | 해당사항 없음 | 상무부-사업신청보고서(타당성 연구보고서), 계약서 및 회사정 관 심사 <br> 국무원-허가여부 결정(최종) |


| 구 분 | 외국인투자금액 | 허가기관 |
| :---: | :--- | :--- |
|  | ＊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앞서 <br> 상무부에 할당비율 및 허가증 <br> 신청 요함 |  |
| 서비스업 | 해당사항 없음 |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청：서류심 <br> 사 및 허가여부 결정，상무부에 <br> 허가사항 신고 |

출처：산동성 대외경제무역청 외국인투자기업심사관리권한（外商投资企业审批管理权限）에 관한 자료 참조．
（2）영업허가규정 및 허가관리절차
합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청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안에 심사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사업제안 승인을 받은 자는 타당성 연구보고서 작성，공상행정관리기관에 회사명칭 심사，영업장소 및 설 비，원자재，외환수지，법인 인감，회사정관，자산평가 등 서류를 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허가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안 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허가를 받은 자는 30 일 안에 공상행 정관리기관에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며，사업등록을 한 날로부터 30 일 안에 세무，세관，외환관리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동성의 경우 허가기간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 일로 규정하고 있 는데，이는 회사법 제 3 조 및 시행규칙 제 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0 일， 합자기업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5 일에 비 교하여 30 일～75일이 단축된다．${ }^{171)}$

[^32]
## 제 4 장 중국의 영업허가에 관한 쟁점별 분석

## 제 1 절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

영업허가는 사실상 국가 행정권이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간섭하는 형태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으며，따라서 국가 행정권의 개입범위와 한계의 설정은，즉 영업허가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설정은 영업허가제 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아래에서는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의 설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1．영업허가의 범위 및 기준설정

영업허가의 범위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범위를 말한다． 또한 영업허가 범위의 확장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허가의 범위가 축소되면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172)}$ 이에 따라 영업허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입법자의 의지에만 맡길 수 없고，일정한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영업허가 범위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를 판단한 후에 해당 허가대상을 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영업허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첫째，영업허가의 범위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실현이라는 가치를 보 호해야 한다．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실현토록 하는 것은 영업허가제도 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영업허가제도가 비록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만，그러한 제한은 국민 개인의 이익과 사회공익 의 조절을 위한 것이거나 국민의 이익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33]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 한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특히 영업허가의 범위 설정에 있어 서는 국가，사회 및 단체의 이익 또는 제 3 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사 항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대상으로 설정해서는 아니 되며，반대로 국가， 사회 및 단체의 중대한 이익내지 권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허가의 범위 에 두어야 한다．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 대상 범위로 설정하는 경우 현대사회의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이념에 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의 낭비 및 국가적 효율성의 저하 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173)}$

둘째，영업허가의 범위는 공익의 보장이라는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영업허가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의미하며，따라서 영업허가를 인정하는 범위나 영역은 오직 국가 및 사회적 공익과 관련 되는 영역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174)}$ 무엇이 공익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법 영역에서 공익은 주로 공공질서의 유지와 안정，경제 질서의 안정과 유지 및 효율성，사회적 자원의 합리적 배치 와 분배 및 이용，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사회 구성원 이익의 지속 적 보장 등과 관련된다．영업허가의 대상도 국가안전，경제적 안정，공 공이익 및 국민의 건강，신체，생명 및 재산에 관한 사항，자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유한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및 사후 적 관리조치로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공익에 중대한 손해 가 예상되는 기타의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175)}$
그러나 사회적 또는 국가적 공익에 관련된 영역의 구체적인 사항이 반드시 영업허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시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개기구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4]셋째，영업허가 범위는 시장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 다．영업허가의 범위는 정부와 시장질서의 관계 및 정부와 기업 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결된다．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시스템의 관계 및 정부와 기업 사이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특히 WTO 가입 후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주요 과제는 시 장의 통일성，자유성，경쟁 및 공정성의 보호로 집결되고 있다．이에 대한 정부의 방향전환에 따라 각종 허가제도 개혁의 근본적인 목표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그런데 영업허가제도는 정부의 거시 적 통제의 수단이며 경제규제 강화의 한 방식이다．영업허가의 범위 설정을 통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제거하여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기도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시장진입 을 강화 내지 엄격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업허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 칙이 있다．즉，시장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시스 템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시장시스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지만 공정한 중개기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중개기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시장시스템 또는 중개기관 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후적 관리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사후적 관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고 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176）

## 2．영업허가의 범위에 대한 검토

## （1）행정허가법상 허가범위

행정허가법 제 12 조에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77)}$

176）孙笑侠，앞의 책，266면．
177）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
(1)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의 거시조정(예, 투자항목, 산업배치, 수 출입관리 등), 생태환경보호178) 및 신체의 건강,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 등에 직접 관계되는 활동(예, 약품관리법규에 관련의 활동 등)으로 법정조건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는 사항
(2) 자연자원의 개발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및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 되는 특정업종의 시장진입 등, 특정한 권리의 부여가 요구되는 사항
(3)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직업, 업종으로 특별한 신용이나 명예, 특수조건 또는 특수기능 등 자격이나 자 질이 요구되는 사항(교원, 변호사의 자격 등)
(4) 공공안전, 신체의 건강, 생명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설비, 시설, 생산품, 물품으로서 기술기준이나 기술규범에 따라 검험, 검측, 검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심사결정을 요하는 사항(항 공기, 선박, 자동차의 설계 생산이나 축산물도축에 관한 것 등)
(5)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 주체자격의 확정(기업법인의 등 기 및 사회단체, 사업단위, 민영 비 기업 사업장의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사 항이다. ${ }^{179)}$

특히 위 (6)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첫째, 현행 법률이나 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행정허가사항에 대하 여 규정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후에 제정되는 법 률, 행정법규 현실적 상황에 따라 행정허가법이 정한 상술 5개 사항

하여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8)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법규로는 환경보호법, 물 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고 체폐기물방지법, 소음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건설공사항목환경보호조례 등이 있다. 179) 정이근, 중국공법학연구, 도서출판 오름, 2007년, 306면.

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셋째， 지방성 법규，성급 인민정부의 규장 및 국무원의 결정으로는 상술의 다섯 가지 행정허가사항 이외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는 점 이다．${ }^{180)}$

또한 동법 제 13 조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허가 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즉，（1）개인，법인 또 는 기타 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2）시장경쟁 시스 템이 유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상품가격의 결정，모종의 업종에 대한 투자），（3）업계조직이나 중개기구181）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경우，（4）행정기관이 사후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방식을 통하여 충 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다．${ }^{182)}$

## （2）국무원의 결정에 의한 행정허가 범위의 설정

국무원은＇결정＇의 형식으로 행정허가의 대상을 정할 수 있다．183）결 정의 형식으로 허가사항을 정한 후，임시적인 행정허가사항을 제외하 고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의 제정 을 제청하거나 스스로 행정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또한 법률이나 행 정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지방성법규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180）정이근，위의 책， 307 면．
181）여기서 말하는 중개기구는 주로 비정부성，공익성，공공권력성 및 중개성의 특 징을 가지는 조직을 말하며，예컨대 체육애호가협회，노인협회，변호사사무소，회계 사사무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黎軍，行業組織的行政法問題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2年版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182）행정허가의 대상범위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연구는 李诗林，论行政许可设定范围的合理界定，行政法学研究，2008（3），69면에서 121면을 참고 하시기 바란다．
183）행정허가의 설정행위를 일종의 입법행위로 보면，국무원의＇결정＇행위는 헌법이나 입법법이 정한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국무원이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는 경 우에는 행정법규의 형식을 취하여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행정허가법 제 14 조의 이 규 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있다．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고 행정관리의 필 요에 따라 행정허가의 신속한 실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장으로써 임시적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적인 행정허가의 실시가 만 1 년을 경과하고 계속적인 실시가 필 요한 경우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지방성법규의 제정을 제청하여야 한다．다만 지방성법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 규장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자질에 관한 행정허가를 정할 수 없다．

## （3）회사법에 의한 영업허가의 범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신 회사법에서는 기존의 주식회 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 비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준칙주 의 원칙으로 하고 허가주의를 예외로 하는 회사 설립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였다．이는 상술한 행정허가법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 다．184）회사법 규정은 회사의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제 1 장 총칙에서 기 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회사는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 여야 하고，사회공중도덕과 상업도덕 및 성실신용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와 사회 공공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회사의 합 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그 침해를 받지 않는다（회사법 제 5조）．${ }^{185)}$ 회사의 설립 시에는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본법이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면 회사등기기관 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각각 등기한다．본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못한

184）肖海军，앞의 글， 22 면．
185）公司法 第五条：公司从事经营活动，必须遵守法律，行政法规，遵守社会公德，商业道德，诚实守信，接受政府和社会公众的监督，承担社会责任。公司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不受侵犯。

다．법률，행정법규에 심사비준을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회사 등록 전 에 법에 따라 심사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회사법 제6조）．${ }^{186)}$ 법에 따 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회사영업허가서의 발급일자가 회사의 설립일자이다．회사영업허가서에 는 반드시 회사의 명칭，주소，등록자본，실제납입자본，경영범위，법정 대표 성명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회사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회사법 제7조）．${ }^{187)}$

## 제 2 절 영업허가의 절차

영업허가절차는 행정처분절차의 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이와 관련 하여 공통적 적용 근거가 되는 행정허가법은 중요한 법적근거가 된 다．188）본 절에서는 중국의 행정허가법을 바탕으로 영업허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절차적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일차적으로 개별법규가 구체적인 영업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절차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지지만，구체적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 허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절에서 소개하는 영업허가의 기본절차는 개

186）公司法 第六条：设立公司，应当依法向公司登记机关申请设立登记。符合本法规定的设立条件的，由公司登记机关分别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不符合本法规定的设立条件的，不得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法律，行政法规规定设立公司必须报经批准的，应当在公司登记前依法办理批准手续。公众可以向公司登记机关申请查询公司登记事项，公司登记机关应当提供查询服务。
187）公司法 第七条：依法设立的公司，由公司登记机关发给公司营业执照。公司营业执照签发日期为公司成立日期。公司营业执照应当载明公司的名称，住所，注册资本，实收资本，经营范围，法定代表人姓名等事项。公司营业执照记载的事项发生变更的，公司应当依法办理变更登记，由公司登记机关换发营业执照。
188）罗文燕，앞의 책，266면．

별 영업허가 관련 입법이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보 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영업허가의 기본적 절차는 개별법규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행정처분절차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우선, 일반적 허가절차에 근거하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호와 관련한 영업허가절차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영업허가의 신청, 수리, 심사 및 결정의 단계는 모두 이들 핵심사항의 구체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사전에 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허가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처분결정의 사유를 설명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변명을 위한 의견을 듣도록 하 는 과정이다. 처분이나 정책결정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 에도 그러한 결정의 근거와 이유 및 정책방향을 고지하여 처분기관의 결정이 더욱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불이 익한 처분,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둘째, 허가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영업허가와 관련된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적법한 권익에 관련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인 국민은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주 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당해 처분기관은 이를 접수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주로 청문제도로 이해되고 있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각종 허가과정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전설명이나 고지절차 도 의미가 없다.

셋째, 사후고지에 관한 절차이다. 허가기관이 부과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에 불 복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허가기관에 대한 사후적 감독이 가 능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영업허가의 구체화된 절차로서 허가의 신청，수 리，심사，청문，결정 및 취소 철회의 각 절차는 허가 관련 당사자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체적 절차로 이해된다．특 히 영업허가의 과정에서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식 또는 비공식 의 청문절차를 이행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제 3 절 영업허가의 관할기관

## 1．관할기관의 설정

영업허가의 관할권은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관할권 분배를 말하며， 영업허가권의 합리적 배분은 허가주체가 허가권을 유효히 행사하는 전 제가 되며，이러한 전제하에서 영업허가권의 행사는 유효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누구도 협의에 의하여 영업허가에 관한 관할권을 변경할 수 없다．영업허가의 관할은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된 권한의 배분이 며，따라서 규범성을 갖는다．${ }^{189)}$
그러나 허가의 관할은 신청인의 실체적 권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 고 어떠한 허가사무의 관할주체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허가주체 가 관할권을 남용 또는 일탈할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나 그 허가행위 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관할권이 없는 허가기관이 허가를 한 경우라도 후에 권한 있는 허가기관이 이를 추인한 경우 당해 허가행 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영업허가의 관할기관은 지역관할，등급별 관할，특별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지역관할은 토지관할 또는 구역관할을 의미하며，동급 허가기 관 또는 수권기관이 각 관할구역 범위에서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권한

[^35]을 배분한 것이다．이에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허가기관의 관할구역으 로 관할기관을 정하는 방식과 신청인이 신청한 행위의 발생지（영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기관을 정하는 방식이 있다．190）

등급별 관할은 동일한 직렬의 상하기관 간의 관할에 관한 문제로서， 영업허가 권한을 어느 등급의 기관이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현행 법규에 의하면，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대개 3 개 등급으로 구분된다．즉，국무원 및 각부 위원회，성급 인민정부 및 각 주무부처，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주무부처로 구분된다．

국무원 및 국무원의 각부 및 위원회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국가이익에 관계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가의 경우，또 는 특수한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국무원 및 각부•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예컨대，광산자원채굴등기관리방 법（矿产资源开采登记管理办法） 제 3 조에서는 국가계획광구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구 내에서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경우，영해 및 중국 관할의 기타 해역에 서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경우，외국인 투자로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경우，기타 동 조례가 정하는 광산자원의 채굴은 국무원 지질광산 주 관부처의 심사비준을 거쳐 채굴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191）

[^36]사물관할은 동급의 허가기관이 각자의 권한에 따라 허가권을 행사 하는 것이다．${ }^{192)}$ 예컨대，기업등기사무는 공상기관의 관할에 속하고 여타의 기관은 기업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또한 총기 관리법에서 민간용 총기의 제조업체는 국무원 공안부문이 확정하고， 민간용 총기의 유통업체는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정하는 바와 같 이 민간용 총기의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는 국무원 공안부문（공안부）이 관할하고，유통에 관한 영업허가는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관할한 다（총기관리법 제15조）．${ }^{193)}$

특별관할은 등급별 관할，지역관할 및 사물관할의 예외적인 관할제 도를 일컫는 것이다．다양한 국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러한 관할제 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에 특별한 관할제도가 필 요하게 되었다．특별관할에는 공동관할，이송관할，지정관할 등이 있 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다．

## 2．영업허가권의 충돌과 해결에 대한 검토

영업허가권의 관할은 대부분 법규에 해결되고 있지만，경우에 따라 서는 허가권한을 주장하는 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국가기 관 사이에서 허가권 관할의 충돌유형은 주로 동급 직능기관 사이의 관 할권 분쟁，동급 및 동일 직능기관 사이의 관할권 분쟁，상•하급 허

[^37]가기관 사이의 관할권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급 직능기관 사이 에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며, 동급 및 동일 직능기관 사이의 관할권 분쟁은 주 로 허가사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미치는 경우이다. 상-하급 허 가기관 사이의 관할권 분쟁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에 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허가관할권의 분쟁해결은 주로 영업허가의 관할권에 대하여 이해관 계가 있는 당사자가 관련 재결기관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재결기관은 서면심리를 통하여 관할권의 귀속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 제4절 영업허가의 관리•감독

## 1. 영업허가의 관리 - 감독의 필요성

구체적 행정행위로서의 영업허가는 허가주체가 신청인의 신청에 의 하여 그 내용을 심사함으로써 특정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 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주체가 허가신청을 근거로 영업허 가를 결정하는 것은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 는 것으로, 신청인은 이로써 특정한 사업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허가기관의 이러한 판단은 신청인이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허 가의 범위에서만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허 가를 받은 자가 정해진 의무를 자율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사후적 관 리•감독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 권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즉, 허가주체 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적법하게 사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상응하는 법정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감독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허가결정은 신속히 시정한다. 또한 신청인의 신청 및 사회적 상황 변 화에 따라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법적 의무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한편, 허가주체는 영업허가를 받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행할 의무도 있다. 경우 에 따라서는 이러한 권리침해가 허가주체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가주체는 그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하 여야 할 필요도 있다.

## 2. 영업허가 관리•감독의 내용에 대한 검토

허가기관이 특정사업의 영업허가를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허가주체는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의 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검사의 주된 내용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에 적합한 영업활동을 하는지 여부 및 그 영업허가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관련된 것이다. ${ }^{194)}$ 둘째, 검사과정에서 영업허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 가 발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셋째, 검사과정에서 사정 의 변경이나 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넷째, 검사결과 영업허가를 취
194) 이때 정기검사는 주로 연차검사에 해당한다. 회사법인등기조례 제 24 조 및 제 30 조에서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법인의 등기관리에 대하여 연차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인은 등기의 주관기관이 정한 일시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법인이 연차검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사안에 따라 경고, 벌금, 위법소득의 몰수, 영업의 중지, 허가 증의 취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한다.

득한 자가 허가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정조치에는 위법행위의 중지，원상회복의 명 령 및 행정처벌 등이 있다．다섯째，영업허가에 대한 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자에 대한 단속 기 능을 발휘한다．${ }^{195)}$

영업허가의 관리•감독은 영업허가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영업의 허가주체가 허가를 한 후 상대방인 국민이 그 허가내용 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가 여부를 비롯하여 영업허가에 따른 법적 의 무를 이행하는가를 관리•감독하는 활동을 총칭한다．이러한 관리•감 독의 내용은 허가에 따른 검사，허가의 중지，허가의 변경，허가의 철 회 및 허가의 말소로 구성된다．

영업허가주체는 영업허가에 따른 경영활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하 여 검사를 수행하고，검사결과，위법사실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원이 서명한 후 문서를 보존한다．허가에 의거한 검사과정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성실히 검사를 수검해야 한다．검사과정에서 허가주체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당해 허가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검측 및 실험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 5 절 영업허가 관련 권리구제

영업허가와 관련한 권리구제의 실질적 의의는 영업허가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심사를 통하여 영업허가의 신청인，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영업허가권 행 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토록 하여 사회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영업허가에 관련된 권리구제는 허가 신청인 또는 취득자의

[^38]권리구제신청을 전제로 한다. 이하에서는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 및 행정배상제도를 근간으로 영업허가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살펴본다.

## 1. 행정심판제도

영업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영업허가 관련 당사자가 허가주체의 허가행위로 인하여 그 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기관에 심판 을 청구하여 당해 영업허가 관련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심판기관은 법절차에 따라 당해 영업허가 관련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판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행정감독제도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 분을 시정토록 하는 통제기능을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주체가 내린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하는바 행정심판법 제 1 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 및 시정하고, 개인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헌법을 근거로 본 법을 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업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처리할 사항은 영업허가권의 행사 로 인하여 야기되는 행정상의 분쟁으로서 영업허가 관련 행위를 대상 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기관의 허가증 발급거절이 위법 또는 명백히 부당한 경우, 허가증의 변경•중지•취소가 위법 또는 명백히 부당한 경우, 영업허가에 관한 감독 또는 검사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 한 경우, 기타 영업허가에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구체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행정심판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196) 심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심리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점에서 행정소송과
196) 영업허가 관련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행정심판기관이 신

큰 차이가 있으며, 이처럼 행정심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한 것 은 심판의 효율성 확보와 관련이 있다. 당사자가 당해 행정심판의 결 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뿐이다.

## 2. 행정소송제도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를 말한다. 영업허가에 관한 행정소송제도는 결국 행정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 사법해석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영업허가기관의 구체적 행정처분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추상적 행정입 법 행위 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구체 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 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한다. ${ }^{197)}$

행정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도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 칙이 적용된다. 원고의 소송제기와 법원의 소송절차 진행에도 불구하 고 영업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여전히 효력을 발하고 법원 의 판결이 있기 전에 당해 허가기관은 당해 처분을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부정지원칙 역시 예외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피고인 행정청이 집행의 정지를 결정한 경우, 법원이 재정으로 집행을 정지 한 경우, 법규가 집행정지를 규정한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39]실무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허가권한과 국민의 경영자주권의 확보 의 문제가 그 핵심에 놓여있다. 경영자주권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당 연히 가지는 기본권으로 경영자주권의 침해는 통상 기업조직과 그 주 관부처 사이에서 발생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명령적인 계획의 하달이나 세금을 먼저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2) 명칭의 강제변경, 기업성질의 변경, 강제 연합이나 분리 합병, (3) 강제로 계 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4) 영업망에 대한 간섭 또는 제 한, (5) 법에 따라 직공대표대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초빙 하여야 하는 국유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집체기업의 법정대표를 교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6) 기타 기업의 경영자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이다.

그밖에 행정상대방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여 행정상대방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경 우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행정상대방인 국민이 영업허 가주체의 신청에 대한 지연 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2) 허가 주체가 영업허가증의 발급을 위법하게 거절하는 경우, (3) 영업허가주 체인 행정기관의 허가증 발급행위가 위법한 경우, (4) 영업허가주체의 허가증에 대한 변경, 중지 또는 취소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5) 영업허가 관련 감독기관이 법정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행정상대방인 국민이 허가주체의 영업허가 관련 행위에 불복하는 경 우 등이다. ${ }^{198)}$

그러나 중국의 행정소송법은 사건 수리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 으며,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이 판결에 따른 집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행정기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의 경 우, 특히 의무를 이행하는 판결의 경우 종종 그 집행을 거부한다. 판

[^40]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는 국민의 합법권익 보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199)

## 3. 행정배상제도

영업허가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는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 뿐만 아니라 행정배상제도에 의해서도 구제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1) 영업허가주체가 영업허가증 또는 면허증 등을 위법 하게 압류 또는 취소한 경우, (2) 영업허가와 관련한 감독권을 가진 행 정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인 국민의 신체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 영업허가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체 권 또는 재산권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에 행정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허가 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의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등은 국가배상법 상 배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 5 조에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권행사와 무관한 개인행위,200) 개인과 법인 및 기타 단체 의 자기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
199) 판결 후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의 결과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 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조치를 취하여 그 법정의무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결의 결과 피고인 행정기관이 패소한 경우에, 인민법원 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부 지방의 간부가 판결이 당해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행정효율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공공연히 법원판결의 집행을 저지하는 경 우도 있다고 한다(정이근, 앞의 책, 234 면).
200)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이 직권을 위법 행사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획득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직권행사와 무관한 개인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 상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행정선행처리원칙에 의하여 행정배상 청구인이 법원에 배상소 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상의무기관에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행정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배상의무기관 이 수리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겨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청구인이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상청구인은 사법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 }^{201)}$

행정배상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청구인의 행정배상청구는 다음의 요 건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배상청구인은 반드시 적격을 가져야 하고, 국가배상법 제6조가 규정 한 배상청구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배상청구는 반드시 배상의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로 위법한 결정을 한 행정기관, 위법하게 직권을 행사한 공무 원이 소속된 행정기관, 법률 및 법규가 수권하고 수권한 행정권을 위 법하게 행사한 조직,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행정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경우의 위탁기관, 심판결정이 침해를 가중한 경우의 심판기관 등이다. 셋째, 배상청구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배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배상법에서는 행정배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 사자의 배상청구는 법률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수리하지 않는다.

배상의 청구는 서면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배상청구인이 청구서 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또한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202)}$ 배상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7 일 이내에 입안

[^41]의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배상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충분한 경우, 배상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며, 관련 자료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위원회 주임이 배상위원 회의 심리에 상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3)}$ 배상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204)}$

무, (2) 구체적인 요구, 근거 사실과 이유, (3) 신청의 년, 월, 일 등이다. 둘째, 시효 요건이다. 배상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은 청구인이 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시효는 2 년으로 한다. 국가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위법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부대의 방식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심판의 제기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법정기간에 따라 부대배상청구의 기간을 확정한다.
203) 배상사건 심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즉, (1) 사건의 유래, (2) 배상청구인의 기본상황과 배상의무기관 및 행정심판기관의 명칭 및 그 법정대리인, (3) 배상신청인의 신청사항과 이유, (4) 신청된 배상사건의 확인사항, 배상의무기관의 결정 상황 및 심판기관의 심판상황, (5) 사건 담당자의 인정사실 및 근거, (6) 처리의 견과 이유 등이다(천강 외, 앞의 책, 319 면).
204) 인민법원배상위원회결정서는 결정사항에 따라, 각기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과 심판기관에 송달한다. 행정배상의무기관이 법원의 판결, 재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 우에 1심법원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발전과정 및 법적규제에 대한 이 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영업허가의 절차，영 업허가의 관리•감독과 권리구제 등 쟁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국 진출기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영업허가제도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영업허가 제도에 관한 인식의 문제는 영업허가사항의 설정에 있어서 입법자，집 행자 또는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관련된다．이들이 영업허가 사항을 설 정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거래의 안전 및 경제 질서의 안정이지만，각종 영업의 장려 또는 거래의 촉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 려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예컨대，행정허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 무원의 부문규장，지방성법규 및 성급 지방정부가 설정한 영업제한 위 주의 허가사항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특히，투자진입과 기업설립의 측면에서 허가사항은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205）
둘째，영업허가사항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 불명확하다． 행정허가법 제 12 조가 규정한 행정허가사항의 절대 다수는 영업허가사 항과 관련되는데，비록 제 13 조가 설정된 기본 취지는 행정허가 사항으 로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하는 것이지만，제 13 조가 규정 한＂행정허가사항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의 임의적 규정으로는 각종 행정법규에 의하여 허가사항으로 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특히 2004년 국무원이 공포한 결정 등에 의하여 행정허가사항으

205）肖海军，论我国营业行政许可的制度变迁与改革路径，财经理论与实践，第 30 卷第 158 期， 2009（3），126면．

로 유보된 500개 항목에 이르며 정부의 비준이 필요한 투자사업 항목 의 범위는 농림，수리，에너지，교통 운수，정보산업，원자재，기계제 조，경공연초，하이테크，도시건설，사회사업，금융，외상투자，해외투 자 등 13 개 영역의 방대한 영업 관련 사항에 걸쳐 있어 여전히 광범 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나아가 지방성법규나 지방정부규장이 설정한 영업허가사항을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인식 된다．${ }^{206)}$

셋째，영업허가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영업허가 관청의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에서 민간자본 내지 민간기업은 국유자본 또는 국유기업이나 외국투자주체와 다른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 다．산업 영역에 따라서는 민간기업 내지 민간투자 주체에 개방되지 않은 부분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중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 허가영역이라 하더라도 허가과정에서 민간기업 또는 민간투자주체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한다．${ }^{207)}$ 현행 법률과 정책은 국유자본 또는 외국자본의 진입을 많은 영역에서 허용하고 있는바，예컨대 독점사업 영역，공공사업과 기반시설 영역，사회사업 영역，금융서비스업종，국 방기술산업 영역으로의 진입을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사 및 허가제도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행정허가제도의 운영상 민간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상존하고 있 다．한편으로 영업허가제도의 운영상 자국인 투자주체와 외국인 투자 주체 간의 차별적 대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영업허가제도상 지역보호주의가 존재한다．행정허가법 제 15 조 에 의하면 행정허가법 제 12 조에서 열거한 사항（행정허가제도를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206）肖海军，앞의 논문， 127 면．
207）郑曙光•汪海军，市场管理法新论，中国检察出版社 2005年，128唈．

지방성법규로써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로 행정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속한 행정허가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장은 임시적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 적 행정허가제도의 시행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본 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지방성법규의 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술한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규범성문건에 의한 영업허가의 제한 등 허가권 설정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성법규와 규장에 의한 임시적 허가권의 존재를 전제 로 한다. 이것은 영업허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지역보호주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정이근, 중국공법학연구, 도서출판 오름 2007.
천강 외, 중국사법구제제도, 세종출판사 2005.
한대원 외 9인, 현대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정철호 외, 12.5 규획기간 중국경제 및 철강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포 스코경연연구소 보고서, 2011.

지만수, 최의현, 이남주, 김희진, 백권호,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5-18, 2005.

유예리, 이정표, 양효령, 마광, 김은환, 중국 법제의 분야별 시리즈 (I) 중국의 금융법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 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10, 2011.

임종관, 이주호, 중국 물류시장 진입조건과 절차: 14 개 물류부문별 진입관련 규정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물류규정 연 구 ( I ), 2005 .

노형진, 중국산업의 고도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2007.

정이근, 중국의 입법체계와 입법 간 충돌의 해결원칙, 중국법연구 제17집, 2012.

정이근, 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 공법학연구 제 5 권 제 3 호, 2004.

왕잉，한국기업의 중국투자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성화，중국 경제발전 전환시기의 외국인투자법제，영산대학교 2012년 국제법무컨퍼런스자료집．

정이근，중국투자법 핵심요약，영산대학교기업법무지원센터 2011.

## 2．국외문헌

姜明安，行政法与行政诉讼法，北京大学出版社 1999.
美明安，行政法與行政訴訟法，北京大學出版社•高等敉育出版社 2005.
乔晓阳，立法法讲话，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00 ．
罗豪才，行政法学，北京大学出版社 1996.
罗文燕，行政许可法研究，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3.
黎軍，行業組織的行政法問題研究，北京大學出版社 2002.
马怀德，行政许可，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4.
孙笑侠，法的现象与观念，群众出版社 1995.
杨海君，行政许可研究，人民出版社 2001.
应松年，当代中国行政法，中国方正出版社 2005 。
张兴祥，中国行政许可法的理论和实务，北京大学出版社 2003.
郑曙光 汪海军，市场管理法新论，中国检察出版社 2005.
朱维究 王成栋，一般行政法原理，高等教育出版社 2005.
朱景文•韩大元，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研究报告，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0.

朱羿银，中国法概论，法律出版社 2007.
［德］平特纳，德国行政法，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9.
胡锦光•韩大元，中国宪法，法律出版社 2004 。
江必新，论行政许可的性质，宪法学 行政法学，中国人民大学复印报刊资料 2004（8）．

郭道晖，对行政许可是赋权行为的质疑－关于享有与行使权利的一点法理思考，法学 1997（11）．

罗文燕，权利限制与权利保障—对行政许可制度的再认识，行政法学研究 2003（3）．

孙效敏，论吊销营业执照的法律后果，现代法学 第26卷 第四期，2004．
刘东亮，无害性审查：行政许可性质新说，行政法学研究 2005（2）．
李诗林，论行政许可设定范围的合理界定，行政法学研究 2008（3）．
朱芒，日本的行政许可—基本理论和制度，中外法学，1999（4）．
陈光，区域立法与中央和地方立法关系的完善，宪法学 行政法学，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2010（4）．

肖海军，论我国营业行政许可的制度变迁与改革路径，财经理论与实践 2009（2）．

肖海军，论营业行政许可的法律属性与合理边界，行政法学研究 2008（4）．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公报 2004）．

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国务院公报 2004（25）．
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国务院公报 2005（10）．

Sir William Wade \＆Christopher Forsyth，Administrative Law，Oxford Univ．Press（N．Y．），8th ed， 2000.
<부록 1> 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 의 행정심사비준 목록<부록 2> 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 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国务院关于第五批取消和下放管理层级行政审批项目的决定（2010．7．4）
国务院决定取消的行政审批项目目录（113项）

|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国家发展改革委 | 1 | 电力建设基金投资项目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2 | 总投资5000万元以上及中央企业国家鼓励的内资项目进口设备免税审批 | 《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 |
| 科技部 | 3 | 国家大学科技园符合税收减免条件审核确认 |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国家大学科技园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7］120号） |
|  | 4 | 科技企业粰化器符合税收减免条件审核确认 |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科技企业粰化器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7］121号） |
| 工业和信息化部 | 5 | 采购通信系统设备（自动进口许可类产品）国际招标审核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6 | 退出电信业务市场审批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国务院令第291号） |
|  | 7 | 互联网电子公告服务专项审批（备案）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国务院令第292号） |
| 国家民委 | 8 | 国家民委所属高校设立硕士学位授予点资格审批 | 《国务院办公厅关于保留部分非行政许可审批项目的通知》（国办发［2004］ 62号）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18 | 设立临时停车场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民政部 | 19 | 利用外资建设殡葬设施审批 | 《㱛葬管理条例》（国务院令第225号） |
|  | 20 | 与境外合资，合作举办社会福利机构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 | 21 | 社会保障卡专用COS <br> （卡内操作系统）核准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22 | 劳动就业服务企业设立审批 | 《劳动就业服务企业管理规定》（国务院令第66号） |
| 国土资源部 | 23 | 国有划拨土地使用权抵押审批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国务院令第 55号） |
| 环境保护部 | 24 | 环境影响评价工程师职业资格登记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住房城乡建设部 | 25 | 风景名胜区建设项目选址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26 | 影响古树名木的建设工程避让和保护措施审批 | 《国务院办公厅关于保留部分非行政许可审批项目的通知》（国办发［2004］ 62号） |
| 铁道部 | 27 | 铁路专用计量器具新产品技术认证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部 $\mathrm{P}^{\text {l }}$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水利部 | 28 | 护堤护岸林木采伐许可 | 《中华人民共和国防洪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1997］第88号） |
| 农业部 | 29 | 农民养殖，种植转基因动植物审批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国务院令第304号） |
|  | 30 | 部级质检机构认可 |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国务院令第53号） |
| 商务部 | 31 | 无专项规定要求的外商投资企业设立境内分公司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 311 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 （国函［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 1995年第6号） <br>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301号） |
|  | 32 | 外商投资企业进口作为出资的设备清单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301号） |
|  | 33 | 外商投资企业名称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 （国函［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 1995年第6号） <br>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301号）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34 | 外商投资企业投资者名称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 （国函［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 1995年第6号） <br>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301号） |
|  | 35 | 外商投资企业法定地址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 311 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 （国函［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 1995年第6号） <br>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301号） |
| 文化部 | 36 | 香港，澳门演出经纪机构在内地设立分支机构审批 | 《营业性演出管理条例》（国务院令第 528号） |
| 卫生部 | 37 | 设立骨髓移植医院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国家人口计生委 | 38 | 涉及计划生育技术的广告审查 | 《计划生育技术服务管理条例》（国务院令第428号）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48 | 建筑外窗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  | 49 | 工业用香精香料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  | 50 | 场（厂）内机动车辆安装许可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广电总局 | 51 | 国产电视剧题材规划立项审查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新闻出版 <br> 总署 | 52 | 音像制品出租单位变更名称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 53 | 音像制品出租单位变更业务范围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 54 | 音像制品出租单位兼并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 55 | 音像制品出租单位合并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 56 | 音像制品出租单位分立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 57 | 从事音像制品出租业务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 58 | 全国性音像制品连锁经营单位设立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 59 | 音像非卖品复制审批 | 《音像制品管理条例》（国务院令第 341号）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体育总局 | 60 | 开办武术学校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61 | 开办少年儿童体育学校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国家林业局 | 62 | 在林业系统国家级自然保护区实验区开展生态旅游方案审批 | 《中华人民共和国自然保护区条例》 （国务院令第167号） |
|  | 63 | 在林业系统地方级自然保护区实验区开展生态旅游方案审批 | 《中华人民共和国自然保护区条例》 （国务院令第167号） |
|  | 64 | 科研，教学单位对国家一级保护陆生野生动物进行野外考察，科学研究审批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批复》（国函［1992］13号） <br> 《林业部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通知》（林策通字［1992］29号） |
|  | 65 | 科研，教学单位对国家二级保护陆生野生动物进行野外考察，科学研究审批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批复》（国函［1992］13号） <br> 《林业部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通知》（林策通字［1992］29号） |
|  | 66 | 非国家重点保护陆生野生动物或其产品年度经营利用限额核准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批复》（国函［1992］13号） <br> 《林业部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通知》（林策通字［1992］29号）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67 | 森林采伐更新验收合格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条例》 （国务院令第278号） <br> 《国务院关于〈森林采伐更新管理办法〉的批复》（国函［1987］151号）《林业部关于发布〈森林采伐更新管理办法〉的通知》（林工字［1987］ 338号） |
|  | 68 | 林业行业标准项目年度计划审批 | 《林业标准化管理办法》（国家林业局令第 9 号） |
|  | 69 | 陆生野生动物资源普查方案审批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批复》（国函 〔1992］13号） <br> 《林业部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陆生野生动物保护实施条例〉的通知》（林策通字［1992］29号） |
|  | 70 | 建立鸟类环志站审批 | 《国家林业局关于印发〈鸟类环志管理办法（试行）》和 〈鸟类环志技术规程（试行）》的通知》（林护发［2002］ 33号） |
| 国家知识产权局 | 71 | 专利代理人执业证核发 | 《专利代理条例》（国务院令第 76 号） <br> 《专利代理管理办法》（国家知识产权局令第 30 号） |
|  | 72 | 专利代理人执业证变更审批 | 《专利代理条例》（国务院令第76号） <br> 《专利代理管理办法》（国家知识产权局令第 30 号） |
|  | 73 | 专利代理人执业证注销审批 | 《专利代理条例》（国务院令第 76 号） <br> 《专利代理管理办法》（国家知识产权局令第 30 号） |


| 部 $\mathrm{P}^{\text {l }}$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国家旅游局 | 74 | 外国旅行社在中国设立常驻机构审批 | 《国务院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关于管理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的暂行规定〉的通知》（国发［198 0］272号） |
| 国家宗教局 | 75 | 在宗教活动场所内设立商业服务网点审批 | 《宗教事务条例》（国务院令第426号） |
|  | 76 | 在宗教活动场所内举办陈列展览审批 | 《宗教事务条例》（国务院令第426号） |
|  | 77 | 在宗教活动场所内拍摄电影电视片审批 | 《宗教事务条例》（国务院令第426号） |
| 中国气象局 | 78 | 人工影响天气作业单位之间转让作业设备审批 | 《人工影响天气管理条例》（国务院令第348号） |
| 银监会 | 79 | 境外非银行金融机构驻华代表处设立审批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2006］第58号） |
|  | 80 | 境外非银行金融机构驻华代表处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2006］第58号） |
|  | 81 | 境外非银行金融机构驻华代表处终止审批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2006］第58号） |
|  | 82 | 境外非银行金融机构驻华代表处首席代表任职资格核准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2006］第58号） |
| 证监会 | 83 | 证券公司证券业务资格审批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2005］第43号）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84 | 外国证券类机构驻华代表机构地址变更审批 | 《国务院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关于管理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的暂行规定〉的通知》（国发［198 0］272号） |
| 保监会 | 85 | 保险代理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86 | 保险公估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87 | 保险经纪公司重大事项变更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88 | 保险公司制定地方保险费率核准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89 | 保险公司分支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电监会 | 90 | 供用电监督资格证核发 | 《电力供应与使用条例》（国务院令第 196号） <br> 《国务院关于第三批取消和调整行政审批项目的决定》（国发［2004］16号） |
| 国家档案局 | 91 | 政府部门或单位与外国团体和组织签订含有利用档案内容的协定备案 | 《国务院办公厅关于保留部分非行政许可审批项目的通知》（国办发［200 <br> 4］ 62 号）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92 | 中央专业主管部门成立档案馆审批 | 《国务院办公厅关于保留部分非行政许可审批项目的通知》（国办发［2004］ 62号） |
| 国家粮食局 | 93 | 陈化粮购买资格认定 | 《粮食流通管理条例》（国务院令第 407号） |
|  | 94 | 陈化粮销售计划审批 | 《国务院办公厅关于保留部分非行政许可审批项目的通知》（国办发［2004］ 62号） |
| 国防科工局 | 95 | 军工电子产品出口立项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96 | 军工电子装备科研生产许可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国家烟草局 | 97 | 烟草专用机械大修理许可证核发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98 | 烟草系统企业多元化经营投资项目审批 | 《国务院办公厅关于保留部分非行政许可审批项目的通知》（国办发［2004］ 62号） |
| 国家海洋局 | 99 | 海洋工程污染物排放种类核定 | 《防治海洋工程建设项目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国务院令第475号） |
|  | 100 | 海洋工程污染物排放数量核定 | 《防治海洋工程建设项目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国务院令第475号） |
| 中国民航局 | 101 | 民用机场专用设备使用许可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111 | 出口单位补办出口收汇核销专用联和出口收汇核销单退税专用联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  | 112 | 出口单位远期出口收汇备案 | 《国务院办公厅关于保留部分非行政许可审批项目的通知》（国办发［2004］ 62号） |
|  | 113 | 外商投资企业或中资企业适用跨国公司非贸易售付汇管理政策审核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 412号） |

国务院决定下放管理层级的行政审批项目目录（71项）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商务部 | 1 | 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核准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412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2 | 境外就业职业介绍机构资格认定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412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3 | 外国非企业经济组织在华设立常驻代表机构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国务院令第412号） | 省级商务主管 <br> 部门（含广州 <br> 市，沈阳市） |
|  | 4 | 外商投资非融资租赁的租赁业企业设立及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mathrm{l}^{\text {l }}$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变更审批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5 | 原国务院有关部门批准设立的外商投资企业的变更事项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6 | 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不含涉及国际快递业务的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1995］76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理企业）设立及 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7 | 直销企业产品说明重大变更审批 | 《直销管理条例》（国务院令第443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8 | 外商投资股份公司（不包括上市公司）的变更事项（不包括公司为上市进行的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及省级以下商务主管部门 |
|  | 9 | 外商投资企业 （专项规定的除外）不涉及批准证书记载变化的变更事项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mathrm{l}^{\text {l }}$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10 | 商务部批准设立的限额以下外商投资企业 （专项规定的除外）的变更事项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11 | 外商投资企业 （专项规定的除外）的非实质性变更事项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1995］ 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301号） |  |
|  | 12 | 限额以上外商投资企业（专项规定的除外）不超过限额的增资事项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13 | 限额以下外商投资股份公司的设立及变更事项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 <br> 门，副省级城市商务主管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14 | 限额以下外商投资城市规划服务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15 | 限额以下外商投资进出口商品检验鉴定机构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16 | 限额以下外商投资国际船舶运输企业设立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部 $\mathrm{l}^{(1)}$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及变更审批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17 | 限额以下外商投资国际船舶代理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18 | 限额以下外商投资光盘复制生产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 省级商务主管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mathrm{l}^{\text {l }}$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19 | 限额以下外商投资认证培训和认证咨询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 311 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20 | 限额以下涉及国际快递业务的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 311 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 | 省级商务主管部门 |


| 部 $\mathrm{l}^{(1)}$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 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 <br>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21 | 限额以下外商投资融资租赁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22 | 限额以下外商投资营业性演出经纪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23 | 限额以下外商投资保险经纪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24 | 限额以下外商独资船务公司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25 | 原在商务部审核权限内的鼓励类产业且不需要国家综合平衡的外商投资企业（专项规定的除外）设立及变更事项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副省级城市商务主管部门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
| :---: | :---: | :--- | :--- | :---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mathrm{l}^{\text {l }}$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项规定的外商投资企业除外）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29 | 限额以下外商投资创业投资和创业投资管理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30 | 外商投资注册资本1亿美元及以下投资性公司的设立及变更事项（含）原商务部批准设立的投资性公司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1995］ 76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部 $\mathrm{l}^{(1)}$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后续变更事项）审批（单次增资超过1亿美元除外）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31 | 限额以下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32 | 限额以下外商投资拍卖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33 | 限额以下外商投资图书，报纸，期刊分销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34 | 限额以下中外合作音像制品批发企业设立及变更审批 |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 35 | 限额以下外商投资非油气矿产勘查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 | 省级商务主管部门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  | 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
|  | 36 | 限额以下外商投资非油气采矿企业设立及变更审批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311号） <br>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的批复》（国函 ［1995］76号） <br>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6号）《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国务院令第 301号） | 省级商务主管部门 |
| 文化部 | 37 | 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 |
|  | 38 | 设置社会艺术水平考级机构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 |
| 质检总局 | 39 | 电线电缆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mathrm{l}^{(1)}$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40 | 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1 | 泵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2 | 电焊条生产许 <br> 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3 | 建筑钢管脚手架扣件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4 | 建筑防水卷材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5 | 汽车制动液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6 | 电热毯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7 | 化肥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48 | 人造板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49 | 特种劳动防护产品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0 | 危险化学品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1 | 治炼用耐火材料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2 | 橡胶制品生产 <br> 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3 | 助力车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4 | 摩托车头盔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5 | 混凝士输水管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6 | 水文仪器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7 | 岩土工程仪器生产许可证核发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国务院令第440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부록 1＞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58 | 机动车安全技术检验机构资格审批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405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 59 | 设立认证咨询机构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 |
| 新闻出版总署 | 60 | 期刊出版增刊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
|  | 61 | 改变连续型电子出版物刊期审批 | 《出版管理条例》（国务院令第343号） |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
| 体育总局 | 62 | 设立健身气功活动站点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县级人民政府体育行政主管部门 |
| 安全监管总局 | 63 | 三级矿山救护队资质认定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安全监管部门和省级煤矿安全监察机构 |
|  | 64 | 四级矿山救护队资质认定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安全监管部门和省级煤矿安全监察机构 |
| 国家外专局 | 65 | 国务院履行出资人职责企业以外的企业聘请外国专家资格认可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人民政府外国专家归口管理部门 |


| 部 門 | NO | 項目名称 | 設定依据 | 下放管理實施机關 |
| :---: | :---: | :---: | :---: | :---: |
|  | 66 | 中等以下教育机构聘请外国专家资格认可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省级人民政府外国专家归口管理部门 |
| 国家文物局 | 67 | 拍摄市级文物保护单位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设区的市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 |
|  | 68 | 拍摄县级文物保护单位审批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国务院令第412号） | 县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 |
| 国家食品药 <br> 品监管局 | 69 | 医疗用毒性药品收购企业批准 |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国务院令第23号） |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 |
|  | 70 | 医疗用毒性药品批发企业批准 |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国务院令第 23 号） |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 |
|  | 71 | 医疗用毒性药品零售企业批准 |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国务院令第 23 号） | 设区的市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2004．6．29）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 | 境外资源开发类和大额用汇投资项目审批 | 国家发展改革委 |
| 2 | 企业境外投资用汇数额审批（不涉及用汇来源，是否购汇以及购 汇多少的管理） | 国家发展改革委 |
| 3 | 铬化合物生产建设项目审批 | 国家发展改革委 |
| 4 | 道路机动车辆生产企业及产品公告 | 国家发展改革委质检总局 |
| 5 | 京都议定书清洁发展机制合作项目审批 | 国家发展改革委 |
| 6 | 境内外资银行外债借款规模审批 | 国家发展改革委 |
| 7 | 电力建设基金投资项目审批 | 国家发展改革委 |
| 8 | 价格评估人员执业资格认定 | 国家发展改革委 省级人民政府发展改革（物价主管）部门 |
| 9 | 氰化钠生产定点审批及进口许可证核发 | 国家发展改革委 |
| 10 | 工程咨询单位资格认定 | 国家发展改革委 |
| 11 | 注册咨询工程师（投资）执业资格认定 | 国家发展改革委 |
| 12 | 跨省区或规模较大的中小企业信用担保机构设立与变更审批 | 国家发展改革委 |
| 13 | 价格鉴证师注册 | 国家发展改革委 |
| 14 | 电力建设工程土建试验室资质认定 | 国家发展改革委 |
| 15 | 电力建设工程金属试验室资质认定 | 国家发展改革委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6 | 煤炭出口经营许可＋B4 | 国家发展改革委（会同铁 <br> 道部，交通部，商务部，质 <br> 检总局，海关总署等部门） |
| 17 | 价格评估机构资质认定 | 国家发展改革委 省级人 <br> 民政府发展改革部门 |
| 18 | 举办国际教育展览审批 | 教育部 省级人民政府教 <br> 育行政主管部门 |
| 19 | 省级人民政府自行审批，调整的高等职业学校 <br> 使用超出规定命名 范围的学校名称审批 | 教育部 |
| 20 | 开办外籍人员子女学校审批 | 教育部 |
| 21 | 高等学校教授，副教授评审权审批 部 |  |
| 22 | 利用互联网实施远程学历教育的教育网校审批 |  | | 各级人民政府教育行政主 |
| :--- |
| 管部门 |
| 23 |
| 28 |
| 高等学校设置，调整管理权限范围外的本科专 |
| 业，第二学士学位 专业和国家控制的其他专业 |
| 审批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32 | 弩的制造，销售，进口，运输，使用审批 |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33 | 大型群众文化体育活动安全许可 |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 |
| 34 | 外国人乘自备交通工具在华旅游审批 | 公安部 |
| 35 | 典当业特种行业许可证核发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
| 36 | 旅馆业特种行业许可证核发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
| 37 | 公章刻制业特种行业许可证核发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
| 38 | 邮政局（所）安全防范设施设计审核及工程验收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
| 39 | 核电站实体保卫工程验收 | 国家原子能机构公安部 |
| 40 | 军工产品储存库风险等级认定和技术防范工程方案审核及工程验收 | 军工企业主管部门 <br> 公安部 <br>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41 | 金融机构营业场所，金库安全防范设施建设方案审批及工程验收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
| 42 | 边境管理区通行证核发 | 地（市），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43 | 出海船舶户口簿核发 | 沿海县以上公安边防部门 |
| 44 | 出海船舶边防登记簿核发 | 沿海县以上公安边防部门 |
| 45 | 出海船民证核发 | 沿海县以上公安边防部门 |
| 46 | 合资船船员登陆证核发 | 沿海县公安边防部门 |
| 47 | 合资船船员登轮证核发 | 沿海县公安边防部门 |


| 序号 | 項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48 | 台湾居民登陆证核发 | 沿海当地边防工作站沿海县公安边防部门 |
| 49 | 对台劳务人员登轮作业证核发 | 沿海县公安边防部门 |
| 50 | 机动车延缓报废审批 | 地（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 |
| 51 | 麻黄素运输许可 |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52 | 设立保安培训机构审批 |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53 | 易制毒化学品购用证明核发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 |
| 54 | 易制毒化学品进出口许可证核发 | 公安部 |
| 55 | 焰火晚会烟花爆竹燃放许可 | 公安部 <br>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56 | 烟花爆竹运输许可证核发 | 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57 | 边境地区出入境通行证核发 | 省，自治区，直辖市公安边防部门 |
| 58 | 因私出入境中介服务机构资格认定（境外就业，留学除外） | 公安部 |
| 59 | 临时入境许可 | 公安机关出入境边防检查站 |
| 60 | 安全技术防范产品生产，销售审批 | 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 |
| 61 | 核乏燃料道路运输通行许可 | 公安部 |
| 62 | 核材料国内运输免检通行许可 | 公安部 |
| 63 | 设立临时停车场审批 |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公安机关 |
| 64 | 航行港澳船舶证明书核发 | 公安机关出入境边防检查站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65 | 航行港澳小型船舶查验簿核发 | 公安机关出入境边防检查站 |
| 66 | 涉及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审批 | 安全部 <br> 地方各级国家安全机关 |
| 67 | 假肢和矫形器（辅助器具）生产装配企业资格认定 | 省级人民政府民政部门 |
| 68 | 假肢与矫形器（辅助器具）制作师执业资格注册 | 民政部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79 | 出口信用保险相关业务事项审批 | 财政部 |
| 80 | 设立免税场所事项审批 |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 |
| 81 | 国债承销团成员资格审批 | 财政部 <br> 人民银行 <br> 证监会 |
| 82 | 会计师事务所从事证券，期货相关业务审批 | 财政部证监会 |
| 83 | 资产评估机构从事证券业务资格审批 | 财政部证监会 |
| 84 | 列入政府管理范围的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审批 | 人事部 <br> 国务院各有关主管部门 |
| 85 | 举办全国性人才交流会审批 | 人事部 |
| 86 | 设立人才中介服务机构及其业务范围审批 | 县级以上人民政府人事行政主管部门 |
| 87 | 设立技工学校审批 | 劳动保障部 <br> 省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
| 88 | 职业介绍机构资格认定 | 地方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
| 89 | 设立中外合资（合作）职业介绍机构审批 | 省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 |
| 90 | 境外就业职业介绍机构资格认定 | 劳动保障部 |
| 91 | 以技能为主的国外职业资格证书及发证机构资格审核和注册 | 劳动保障部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92 | 补充保险经办机构资格认定 | 劳动保障部 |


| 序号 | 項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05 | 外商投资企业从事城市规划服务资格证书核发 | 建设部商务部 |
| 106 | 风景名胜区建设项目选址审批 |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 |
| 107 | 改变绿化规划，绿化用地的使用性质审批 | 城市人民政府绿化行政主管部门 |
| 108 | 超限高层建筑工程抗震设防审批 | 省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 |
| 109 | 城市桥梁上架设各类市政管线审批 |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市政工程设施行政主管部门 |
| 110 | 房地产估价机构资质核准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地产行政主管部门 |
| 111 | 城市新建燃气企业审批 | 所在城市的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 |
| 112 | 出租汽车经营资格证，车辆运营证和驾驶员客运资格证核发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出租汽车行政主管部门 |
| 113 | 利用国外贷款的铁路项目立项审批 | 铁道部 |
| 114 | 开行客货直通列车，办理军事运输和特殊货物运输审批 | 铁道部 |
| 115 | 企业自备车辆参加铁路运输审批 | 铁道部 |
| 116 | 铁路工程建设消防设计审批 | 铁道公安消防部门 |
| 117 | 建筑企业铁道专业资质认定 | 铁道部 |
| 118 | 工程勘察，设计企业铁道专业资质认定 | 铁道部 |
| 119 | 工程监理企业铁道专业资质认定 | 铁道部 |
| 120 | 工程咨询单位铁道专业资质认定 | 铁道部 |
| 121 | 工程造价咨询单位铁道专业资质认定 | 铁道部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22 | 企业铁路专用线与国铁接轨审批 | 铁道部 |
| 123 | 铁路专用计量器具新产品技术认证 | 铁道部 |
| 124 | 铁路建设项目立项审批 | 铁道部 |
| 125 | 铁路企事业单位进口机电产品标准审批 | 铁道部 |
| 126 | 铁路工程基桩检测单位资质及检测员资格认定 | 铁道部 |
| 127 | 铁道自轮运转特种设备准入许可 | 铁道部 |
| 128 | 铁路工业产品制造特许证核发 | 铁道部 |
| 129 | 铁道计算机联锁设备制造特许证核发 | 铁道部 |
| 130 | 铁路货物装载加固方案审批 | 铁道部 |
| 131 | 铁路运输企业设立，撤销，变更审批 | 铁道部 |
| 132 | 国家铁路大中型建设项目，限额以上更新改造项目和铁道部指定的项目初步设计，变更设计及总概算审批 | 铁道部 |
| 133 | 航运公司安全营运与防污染能力符合证明核发 | 交通部 |
| 134 | 国际船舶及港口设施保安证书核发 | 交通部 |
| 135 | 新增客船，危险品船投入运营审批 | 地（市）级以上人民政府交通行政主管部门 |
| 136 | 从事内地与台湾，港澳间海上运输业务许可 | 交通部 |
| 137 | 公路，水运投资项目立项审批 | 交通部 |
| 138 | 设立引航及验船机构审批 | 交通部 <br> 交通部海事局 |
| 139 | 电信网码号资源使用和调整审批 | 信息产业部 |
| 140 | 电信业务经营者拍卖码号审批 | 信息产业部 |
| 141 | 设立互联网域名注册服务机构审批 | 信息产业部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42 | 电信设备抗震性能检测合格证核发 | 信息产业部 |
| 143 | 基础电信和跨地区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核发 | 省，自治区，直辖市电信 <br> 管理机构 |
| 144 | 采购通信系统设备（自动进口许可类产品）国际 <br> 招标审核 | 信息产业部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59 | 通信，电子投资项目立项审批（移动通信产品除外） | 信息产业部 |
| 160 | 通信勘察设计企业资质认定 | 信息产业部 |
| 161 | 蓄滞洪区避洪设施建设审批 | 各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
| 162 | 水利水电建设工程蓄水安全鉴定单位资质认定 | 水利部 |
| 163 | 水文资料使用审批 |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流域管理机构 |
| 164 | 水文，水资源调查评价机构资质认定 | 水利部 <br>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
| 165 | 水利工程质量检测单位资格认定 | 水利部 <br>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br> 流域管理机构 |
| 166 | 启闭机使用许可证核发 | 水利部 |
| 167 | 水土保持生态环境监测单位资质认定 | 水利部 |
| 168 | 建设项目水资源论证报告书审批 | 各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br> 流域管理机构 |
| 169 | 建设项目水资源论证机构资质认定 | 水利部 <br> 省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
| 170 | 占用农业灌溉水源，灌排工程设施审批 | 各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br> 流域管理机构 |
| 171 | 水利工程建设监理单位资格认定 | 水利部 |


| 序号 | 項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72 | 水利基建项目初步设计文件审批 |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
| 173 | 水利工程开工审批 |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
| 174 | 渔业船舶设计，修造单位资格认定 | 农业部 |
| 175 | 兽医微生物菌（毒，虫）种认定 | 农业部 |
| 176 | 联合收割机及驾驶员牌照证照核发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行政主管部门 |
| 177 | 农业机械维修技术合格证书核发 | 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行政主管部门 |
| 178 | 赴台湾地区举办招商，办展，参展活动审批 | 商务部 |
| 179 | 境内举办对外经济技术展览会办展项目审批 | 商务部 |
| 180 | 铇，锑生产企业出口供货资格审批 | 商务部 |
| 181 | 设立典当行及分支机构审批 | 商务部 |
| 182 | 设立旧机动车鉴定评估机构审批 | 商务部 <br> 省级人民政府商务行政主管部门 |
| 183 | 石油成品油批发，仓储，零售经营资格审批 | 商务部 <br> 省级人民政府商务行政主管部门 |
| 184 | 全国缫丝绢纺企业生产经营资格核准 | 商务部 |
| 185 | 鲜茧收购资格认定 | 省级人民政府商务行政主管部门或茧丝绸生产行政主管部门 |
| 186 | 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核准 | 商务部 |
| 187 | 援外项目实施企业资格认定 | 商务部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188 | 对外承包工程项目投标（议标）核准 | 商务部 |
| 189 | 外国非企业经济组织在华设立常驻代表机构审批 | 商务部 |
| 190 | 外国，港澳台地区企业承包经营中外合营企业，受托经营管理合营企业审批 | 商务部 |
| 191 | 国内企业在境外开办企业（金融企业除外）核准 | 商务部 |
| 192 | 台湾非企业经济组织在大陆设立常驻代表机构审批 | 商务部 |
| 193 | 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审批 | 文化部 |
| 194 | 互联网文化单位进口互联网文化产品内容审查 | 文化部 |
| 195 | 营业性演出内容核准 | 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 |
| 196 | 美术品进出口经营活动审批 | 文化部 |
| 197 | 设置社会艺术水平考级机构审批 | 文化部 <br> 省级人民政府文化行政主管部门 |
| 198 | 护士执业许可 |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
| 199 | 外籍医师在华短期执业许可 | 地（市）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
| 200 | 消毒产品生产企业（一次性使用医疗用品的生产企业除外）卫生许可 |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
| 201 | 生产消毒剂，消毒器械卫生许可 | 卫生部 |
| 202 | 医疗机构设置人类精子库审批 | 卫生部 |


| 序号 | 項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203 | 医疗机构开展人类辅助生殖技术许可 | 卫生部 <br>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
| 204 | 供水单位卫生许可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
| 205 | 涉及饮用水卫生安全的产品卫生许可 | 卫生部 <br>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
| 206 | 人体血液，组织器官进出口审批 | 卫生部 |
| 207 | 设立造血干细胞资料库组织配型实验室和骨髓移植医院审批 | 省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 |
| 208 | 计划生育技术服务人员执业证书核发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口和计划生育行政主管部门 |
| 209 | 计划生育统计调查审批 | 各级人民政府人口和计划生育行政主管部门 |
| 210 | 商业银行，信用社代理支库业务审批 | 人民银行及其有关分支行 |
| 211 | 商业银行，信用社代理乡镇国库业务审批 | 人民银行及其有关分支行 |
| 212 | 银行间债券市场债券上市审批 | 人民银行 |
| 214 | 银行间债券市场双边报价商审批 | 人民银行 |
| 213 | 银行间债券市场结算代理人审批 | 人民银行 |
| 215 | 保税区内生产，加工的黄金制品内销审批 | 人民银行 |
| 216 | 黄金及其制品进出口审批 | 人民银行 |
| 217 | 个人携带黄金及其制品进出境审批 | 人民银行 |
| 218 | 银行票据，清算凭证印制企业资格审批 | 人民银行 |
| 219 | 银行账户开户许可证核发 | 人民银行及其分支行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220 | 商业银行，政策性银行，企业集团财务公司，基金管理公司，证券公司，信托投资公司，城乡信用社联社，金融租赁公司进入全国银行间债券市场备案 | 人民银行 |
| 221 | 国库集中支付代理银行资格认定 | 人民银行 <br> 财政部 |
| 222 | 商业银行承办记账式国债柜台交易审批 | 人民银行财政部 |
| 223 | 商业银行修改银行卡章程审批 | 人民银行 |
| 224 | 贷款卡发放核准 | 人民银行分支行 |
| 225 | 海关派员驻厂监管的保税工厂资格审批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26 | 常驻机构及非居民长期旅客公私用物品进出境核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27 | 小型船舶往来香港，澳门进行货物运输备案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28 | 承运境内海关监管货物的运输企业，车辆注册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29 | 制造，改装，维修集装箱，集装箱式货车车厢工厂核准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30 | 外国在华常驻机构和常驻人员免税进境机动交通工具出售，转 让，出租或移作他用审批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31 | 获准入境定居旅客安家物品审批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32 | 进境货物直接退运核准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33 | 高新技术企业适用海关便捷通关措施审批 | 海关总署及各直属海关 |
| 234 | 长江驳运船舶转运海关监管的进出口货物审批 | 海关总署各直属海关 |
| 235 | 印花税票代售许可 | 当地税务机关 |
| 236 | 增值税防伪税控系统最高开票限额审批 | 县以上税务机关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237 | 外国（地区）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核准 | 工商总局及其授权的地方 <br> 工商行政管理部门 |
| 238 | 工烟草广告审批 | 工商总局 <br> 省级人民政府广告监管机 <br> 关或其授权的省辖市人民 <br> 政府广告监管机关 |
| 239 | 工商总局 <br> 省，自治区，定形式印刷品广市及告登记 <br> 划单列市人民政府工商行 <br> 政管理部门 |  |
| 240 | 商品展销会登记 | 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 |
| 242 | 外商投资广告企业设立分支机构审批 | 工商总局及其授权的地方 |
| 工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批 | 管理部门 |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left.| \begin{array}{l}压力管道的设计，安装，使用，检验单位和人检总局 <br>

员资格认定 <br>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质 <br>
量技术监督部门\end{array}\right\}\)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263 | 民用航空器维修管理人员资格，民用航空器部 <br> 件修理人员资格认定 | 民航总局 <br> 民航地区管理局 <br> 民航总局授权的机构 |
| 264 | 国外（境外）民用航空器维修人员资格认定 | 民航总局 <br> 民航地区管理局 |
| 265 | 民用航空器飞行教员，地面教员执照核发 | 民航总局 <br> 民航地区管理局 |
| 266 | 民用航空器领航员，飞行机械员，飞行通信员 <br> 教员合格证核发 | 民航总局 <br> 民航地区管理局 |
| 267 | 民用航空器驾驶员 I，更类运行许可 | 民航地区管理局 |
| 268 | 民用航空器外国驾驶员，领航员，飞行机械 <br> 员，飞行通信员执照认可 | 民航总局 <br> 地区管理局 |
| 269 | 飞行训练中心合格认定 | 民航总局 |
| 民航地区管理局 |  |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278 | 民用航空进口材料，零部件，机载设备设计批 <br> 准或认可（VDA） | 民航总局 |
| 279 | 民用航空产品技术标准规定项目批准（CTSOA） | 民航总局 |
| 280 | 民用航空器零部件制造人批准（PMA） | 民航总局 |
| 281 | 民用航空器适航委任代表和适航委任单位代表 <br> 认可 | 民航总局 |
| 282 | 民用航空器零部件适航批准 | 民航总局 |
| 283 | 民用航空油料供应商适航批准，油料测试单位 <br> 批准 | 民航总局 |
| 284 | 民用航空化学产品设计，生产批准 | 民航总局 |
| 285 | 民用航空器噪声合格证和涡轮发动机飞机排放 <br> 物合格认可 | 民航总局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296 | 民航专业工程施工图设计审批 | 民航总局 <br> 民航地区管理局 |
| 297 | 民航企业及机场联合，重组，参股和改制审核 | 民航总局 |
| 298 | 民用航空运输凭证印刷企业资格认定 | 民航总局 |
| 299 | 特殊通用航空飞行活动任务审批 | 民航总局 <br> 民航地区管理局 |
| 300 | 限额以下外商投资民航项目建议书和可行性研 <br> 究报告审批 | 民航总局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312 | 广播电视设备器材入网认定 | 广电总局 |
| 313 | 广播电视新闻采编人员，播音员，主持人资格认定 | 广电总局 |
| 314 | 国产电视剧题材规划立项和电视剧片审查 | 广电总局 <br> 省级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主管部门 |
| 315 | 新闻出版中外合作项目审批 | 新闻出版总署 |
| 316 | 设立电子出版物复制单位审批 | 新闻出版总署 |
| 317 | 著作权涉外机构，国（境）外著作权认证机关，外国和国际著作权组织在华设立代表机构审批 | 国家版权局 |
| 318 | 只读类光盘生产设备引进，增加与更新审批 | 新闻出版总署 |
| 319 | 设立中外合资，合作和外商独资出版物分销企业审批 | 新闻出版总署 |
| 320 | 非电子出版物出版单位委托电子出版物复制单位复制计算机软件，电子媒体非卖品审批 |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
| 321 | 电子出版物制作单位接受境外委托制作电子出版物审批 |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
| 322 | 设立电子出版物发行单位审批 | 县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
| 323 | 出版物发行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地址或者兼并，合并，分立审批 | 县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
| 324 | 电子出版物复制单位改变业务范围，合并或者分立审批 | 新闻出版总署 |
| 325 | 期刊出版增刊审批 新闻出版总署 | 新闻出版总署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326 | 期刊变更登记地审批 | 新闻出版总署 |
| 327 | 设立省内出版物连锁经营企业审批＋B318 | 省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 <br> 管部门 |
| 328 | 出版境外著作权人授权的电子出版物（含互联网 <br> 游戏作品）审批 <br> 新闻出版总署 |  |
| 329 | 电子出版物出版单位与境外机构合作出版电子 <br> 出版物审批 | 新闻出版总署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341 | 国家级森林公园设立，撤销，合并，改变经营范围或变更隶属关系审批 | 国家林业局 |
| 342 | 松材线虫病疫木加工板材定点加工企业审批 | 国家林业局 |
| 343 | 普及型国外引种试种苗諫资格认定 | 国家林业局 |
| 344 | 非进出口野生动植物种商品目录物种证明核发 |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办公室 |
| 345 | 引进陆生野生动物外来物种种类及数量审批 | 国家林业局 |
| 346 | 精神药品研制立项审批 | 国家食品药品监管局 |
| 347 | 麻黄素类产品和单方制剂生产计划核准 | 国家食品药品监管局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
| 348 | 麻黄素类产品和单方制剂购用任证核发 |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
| 349 | 生产，经营麻黄素审批 | 国家食品药品监管局 |
| 350 | 麻黄素出口购用证明核发 | 国家食品药品监管局 |
| 351 | 咖啡因和氯胺酮原料药购用证明核发 |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
| 352 | 中药材生产质量管理规范（GAP）认证 | 国家食品药品监管局 |
| 353 |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GLP）认证 | 国家食品药品监管局 |
| 354 | 互联网药品交易服务企业审批 | 国家食品药品监管局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
| 355 | 执业药师注册 |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管部门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left|\begin{array}{l}国家食品药品监管局 <br>

省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 <br>

管部门\end{array}\right|\)| 药用辅料注册 |
| :--- |
| 357 |
| 保健食品广告审查 级以上地方人民政 |
| 府食品药品监管部门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370 | 在境内举办华侨，外籍华人国际性联谊活动审批 | 国务院侨办 |
| 371 | 港澳记者来内地采访审批 | 国务院港澳办 |
| 372 | 互联网站从事登载新闻业务许可 | 国务院新闻办 <br> 省级人民政府新闻办 |
| 373 | 外国通讯社及其所属信息机构在中国境内开展 <br> 经济信息业务审批 | 新华社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387 | 合格境外机构投资者托管人资格审批 | 证监会 <br> 银监会 <br> 国家外汇局 |
| 388 | 期货经纪公司持有 $10 \%$ 以上股权或者拥有实际 <br> 控制权的股东资格核准 | 证监会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404 | 保险资产管理公司重大事项变更审批 | 保监会（会同证监会） |
| 405 | 保险集团公司，保险控股公司及专属自保，相互保险等组织高级管理人员资格核准 | 保监会 |
| 406 | 保险资产管理公司高级管理人员资格核准 | 保监会 |
| 407 | 保险从业人员资格核准 | 保监会 |
| 408 | 保险公司次级定期债发行审批 | 保监会 |
| 409 | 专属自保组织和相互保险组织设立，合并，分立，变更，解散审批 | 保监会 |
| 410 | 境内保险和非保险机构在境外设立（投资入股，收购）保险机构（含保险公司分支机构）审批 | 保监会 |
| 411 | 境内保险及非保险机构在境外设立的保险机构股份转让审批 | 保监会 |
| 412 | 设立保险公估机构审批 | 保监会 |
| 413 | 保险公估机构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 保监会 |
| 414 | 保险公估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 保监会 |
| 415 | 保险公估从业人员资格核准 | 保监会 |
| 416 | 保险公估机构动用营业保证金审批 | 保监会 |
| 417 | 设立保险代理机构审批 | 保监会 |
| 418 | 保险代理机构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 保监会 |
| 419 | 保险代理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 保监会 |
| 420 | 保险代理从业人员资格核准 | 保监会 |
| 421 | 保险代理机构动用营业保证金审批 | 保监会 |
| 422 | 设立保险经纪公司审批 | 保监会 |
| 423 | 保险经纪公司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 保监会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424 | 保险经纪公司重大事项变更审批 | 保监会 |
| 425 | 保险经纪从业人员资格核准 | 保监会 |
| 426 | 保险经纪公司动用营业保证金审批 | 保监会 |
| 427 | 保险公司总公司精算部门，财务会计部门，资金运用部门主要负责人任职资格核准 | 保监会 |
| 428 | 保险公司高级管理人员任职资格核准 | 保监会及其派出机构 |
| 429 | 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设立及重大事项变更审批 | 保监会 |
| 430 | 保险公司股权转让及改变组织形式审批 | 保监会 |
| 431 | 保险公司分支机构重大事项变更审批 | 保监会 |
| 432 | 保险公司解散或撤销时资产协议转让方案审批 | 保监会 |
| 433 | 保险公司依法解散或被宣告破产时保险合同转让方案审批 | 保监会 |
| 434 | 保险公司制定地方保险费率核准 | 保监会 |
| 435 | 投资连结保险的投资账户设立，合并，分立，关闭，清算等事项审批 | 保监会 |
| 436 | 保险公司法律责任人资格核准 | 保监会 |
| 437 | 保险公司资本保证金处置审批 | 保监会 |
| 438 | 保险公司可投资企业债券的信用评级机构核准 | 保监会 |
| 439 | 保险公司拓宽保险资金运用形式审批 | 保监会 |
| 440 | 军粮供应站资格，军粮供应委托代理资格认定 | 省级人民政府粮食行政主管部门 |
| 441 | 外国烟草制品来牌或来料加工，许可证生产，合作开发卷烟牌号审批 | 国家烟草局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442 | 烟草专用机械大修理许可证核发 | 国家烟草局 |
| 443 | 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 | 国家外专局 <br> 省级人民政府外国专家归 <br> 口管理部门 |
| 444 | 聘请外国专家单位资格认可 | 国家外专局 |
| 445 | 组织派遣团组和人员赴境外培训的机构资格认定 | 国家外专局 |
| 446 | 介绍外国文教专家来华工作的境外组织资格认可 | 国省级人民外专局 |
| 口管理部门 |  |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458 | 拍摄文物保护单位审批 | 国家文物局 <br> 省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 <br> 管部门 |
| 459 | 制作考古发掘现场专题类，直播类节目审批 | 国家文物局 |
| 460 | 境外机构和团体拍摄文物审批 | 国家文物局 |
| 461 | 境外机构和团体拍摄考古发掘现场审批 | 国家文物局 |
| 462 | 在古建筑内安装电器设备审批 | 各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 <br> 管部门 <br> 古建筑所在地公安机关 |
| 463 | 各级人民建筑内设置生产用政府文物行政主 <br> 管部门 <br> 古建筑所在地公安机关 |  |
| 464 | 博物馆藏品取样审批 | 国家文物局 |
| 省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 |  |  |
| 管部门 |  |  |
| 465 | 博物馆处理不够入藏标准，无保存价值的文物 <br> 或标本审批 | 级以上人民政府文物行 <br> 政主管部门 |
| 466 | 医疗机构开展医疗气功活动审批和从事医疗气 <br> 功人员资格认定 地（市）级以上人民政府中 |  |
| 医药行政主管部门 |  |  |

＜부록 2＞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 개 항목의 허가사항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472 | 资产管理公司对外处置不良债务登记及外方所 <br> 得收益汇出核准 |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
| 473 | 合格境外机构投资者投资额度，账户，资金汇 <br> 出审批及外汇登记证核发 | 国家外汇局 |


| 序号 | 項 目 名 称 | 實 施 机 關 |
| :---: | :--- | :--- |
| 488 | B股，境外上市外资股和红筹股项下境外募集资 <br> 金调回结汇审批 | 国家外汇局分支局 |
| 489 | 出口单位出口收汇差额核销，核销备查核准 | 国家外汇局分支局 |
| 490 | 进口单位进口付汇备案核准 | 国家外汇局分支局 |
| 491 | 保险公司向境外分保购汇核准 | 国家外汇局及其分支局 |
| 492 | 金融机构大额结汇，售汇交易入市安排审批 | 国家外汇局 |
| 493 | 外汇账户（含边贸人民币结算专用账户）的开立，变更，关闭，撤销以及账户允许保留限额核准 | 国家外汇局分支局 |
| 494 | 机构外汇资金境内划转核准 | 国家外汇局分支局 |
| 495 | 机构单笔提取超过规定金额外币现钞审批 | 国家外汇局分支局 |
| 496 | 境内机构非贸易购付汇真实性审核 | 国家外汇局分支局 |
| 497 | 出国举办经济贸易展览会审批 | 中国贸促会（商务部会签） |
| 498 | 人民防空工程防护设备定点生产企业资格认定 | 国家人防办 |
| 499 | 人民防空工程设计资质认定 | 国家人防办 |
| 500 | 人民防空工程监理资质认定 | 国家人防办 |


[^0]:    1）Sir William Wade \＆Christopher Forsyth，Administrative Law，Oxford Univ．Press （N．Y．），8th ed，2000，p． 76.
    2）［德］平特纳，德国行政法，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9年，pp．164－169．
    3）朱芒，日本的行政许可—基本理论和制度，中外法学，1999（4），pp．102－110．

[^1]:    $96 \%$ 가 참여했다．지도부는 애초 15 년 계획으로 생각했던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가 불과 4년 만에 이뤄졌다고 선언했다．그 후 이에 힘입은 모택동은 수공업과 공상업 부문에 대해서도 바짝 다그쳤다．강압적인 공권력으로 자본주의 기업경영체제를 사 회주의 과도기 노선의 공사합영체제로 전환을 시도하였다．1956년 말까지 사기업의 $99 \%$ ，상업의 $82 \%$ 가 각각 공사합영 체제로 전환했다（胡鞍鋼，迫不及的强國夢，毛澤東擬定‘超美’時間表，人民網－人民論壇（현이섭，정부의 견제에도 마오，‘대약진＇운동 총 동원령，미디어 오늘，기사내용 재인용，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 dxno＝99965，2012년 9월 19일 방문）．

[^2]:    8）肖海军，앞의 글，126면．
    9）应松年，当代中国行政法，中国方正出版社，2005年，723면．

[^3]:    10) 국무원, 제 1 차 행정심사비준항목의 취소에 관한 결정, 국무원공보 2002, (34).
    11) 국무원, 제2차 행정심사비준항목의 취소 및 행정심사비준항목의 관리 방식 변경 에 관한 결정, 국무원공보 2003, (10).
[^4]:    21）曹康泰，行政許可是一部規範政府行爲的重要法律，宪法学校行政法学，2004（8），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14면．

[^5]:    27）刘东亮，无害性审查：行政许可性质新说，行政法学研究，2005（2），pp．116－117．
    28）罗豪才，行政法学，北京大学出版社，1996年，175면．

[^6]:    37）肖海军，论营业行政许可的法律属性与合理边界，行政法学研究，2008（4），21唈．

[^7]:    38）예컨대 행정허가의 범위가 불명확하고，행정허가 사항이 과다하며，행정허가의 설정권이 불명확하고 임의성이 강하며，행정허가의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허가에 중점을 두고 사후감독에 소홀하며，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이용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39）中華人民共和國行政許可法（草案）的說明，2002年8月23日第 9 届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 29 次會議文件。

[^8]:    40）특히 위（6）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첫째，현 행 법률이나 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행정허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여전히 유 효하다는 점이다．둘째，이후에 제정되는 법률，행정법규 현실적 상황에 따라 행정 허가법이 정한 상술 5 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는 점이다．셋째，지방성법규，성급 인민정부의 규장，국무원 결정으로는 상술한 다 섯 가지 행정허가 사항이외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41）行政许可法 第十二条：下列事项可以设定行政许可，1）直接涉及国家安全，公共安全，经济宏观调控，生态环境保护以及直接关系人身健康，生命财产安全等特定活动，需要按照法定条件予以批准的事项，2）有限自然资源开发利用，公共资源配置以及直接关系公共利益的特定行业的市场准入等，需要赋予特定权利的事项，3）提供公众服务并且直接关系公共利益的职业，行业，需要确定具备特殊信誉，特殊条件或者特殊技能等资格，资质的事项，4）直接关系公共安全，人身健康，生命财产安全的重要设备，设施，产品，物品，需要按照技术标准，技术规范，通过检验，检测，检疫等方式进行审定的事项，5）企业或者其他组织的设立等，需要确定主体资格的事项，6）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设定行政许可的其他事项。

[^9]:    42）여기서 말하는 중개기구는 주로 비정부성，공익성，공공권력성 및 중개성의 특징 을 가지는 조직을 말하며，예컨대 체육동호협회，노인협회，변호사사무소，회계사사 무소 등이 있다（黎軍，行業組織的行政法問題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2年版，56면）．
    43）行政许可法 第十三条：本法第十二条所列事项，通过下列方式能够予以规范的，可以不设行政许可，1）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能够自主决定的，2）市场竞争机制能够有效调节的，3）行业组织或者中介机构能够自律管理的，4）行政机关采用事后监督等其他行政管理方式能够解决的。

[^10]:    44）行政许可法 第四十二条：除可以当场作出行政许可决定的外，行政机关应当自受理行政许可申请之日起二十日内作出行政许可决定。二十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本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十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但是，法律，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依照本法第二十六条的规定，行政许可采取统一办理或者联合办理，集中办理的，办理的时间不得超过四十五日；四十五日内不能办结的，经本级人民政府负责人批准，可以延长十五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
    45）公司法 第二条：本法所称公司是指依照本法在中国境内设立的有限责任公司和股份有限公司。

[^11]:    46）公司法 第八条：依照本法设立的有限责任公司，必须在公司名称中标明有限责任公司或者有限公司字样。依照本法设立的股份有限公司，必须在公司名称中标明股份有限公司或者股份公司字样。
    47）公司法 第三条：公司是企业法人，有独立的法人财产，享有法人财产权。公司以其全部财产对公司的债务承担责任。有限责任公司的股东以其认缴的出资额为限对公司承担责任，股份有限公司的股东以其认购的股份为限对公司承担责任。

[^12]:    48）公司法 第七条：依法设立的公司，由公司登记机关发给公司营业执照。公司营业执照签发日期为公司成立日期。公司营业执照应当载明公司的名称，住所，注册资本，实收资本，经营范围，法定代表人姓名等事项。公司营业执照记载的事项发生变更的，公司应当依法办理变更登记，由公司登记机关换发营业执照。
    49）公司法 第二十三条：设立有限责任公司，应当具备下列条件，1）股东符合法定人数，
    2）股东出资达到法定资本最低限额，3）股东共同制定公司章程，4）有公司名称，建立符合有限责任公司要求的组织机构，5）有公司住所。
    50）公司法 第二十五条：有限责任公司章程应当载明下列事项，1）公司名称和住所，2）公司经营范围，3）公司注册资本，4）股东的姓名或者名称，5）股东的出资方式，出资额和出资时间，6）公司的机构及其产生办法，职权，议事规则，7）公司法定代表人，8）股东会会议认为需要规定的其他事项。

[^13]:    60）公司登记管理条例 第十八条：设立股份有限公司，董事会应当于创立大会结束后 30 日内向公司登记机关申请设立登记。申请设立股份有限公司，应当向公司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1）公司董事长签署的设立登记申请书，2）国务院授权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批准文件，募集设立的股份有限公司还应当提交国务院证券管理部门的批准文件，3）创立大会的会议记录，4）公司章程，5）筹办公司的财务审计报告，6）具有法定资格的验资机构出具的验资证明，7）发起人的法人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8）载明公司董事，监事，经理姓名，住所的文件以及有关委派，选举或者聘用的证明，9）公司法定代表人任职文件和身份证明，10）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11）公司住所证明。
    61）公司登记管理条例 第二十二条 第一款：经公司登记机关核准设立登记并发给企业法人营业执照，公司即告成立。
    62）네이버 지식백과，중화학공업에 대한 정의，연원 및 변천에 관한 내용 참조（http：／／ terms．naver．com／entry．nhn？docId＝572695\＆mobile\＆categoryId＝1601，2012년 8월 29일 방 문）．한국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박영구，한국 중화학공업화 연구 총설，서 울해남，2008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14]:    69）马陵琳，长安汽车联手LG化学开发车用锂电池，2011年1月21日重庆晚报新闻内容（重庆晚报2011年1月21日报道，韩国LG化学与长安汽车（微博）在重庆签署开发汽车用锂离子电池系统战略合作协议。目前，双方初步意向建立一家合资工厂，共同研发和生产锂电池，用于汽车和笔记本电脑）。

[^15]:    70）船舶生产许可管理条例（征求意见稿）第二条：国家实行船舶生产许可制度。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船舶生产（包括建造和修理）的企业，必须依照本条例申请船舶生产许可。未取得船舶生产许可的企业，不得从事船舶生产。

[^16]:    件，1）有企业法人营业执照，2）有与拟生产船舶的类型，级别和等次相适应的注册资（本）金，生产场地，生产设施，生产设备，计量器具及检测设备，3）有与拟生产船舶的类型，级别和等次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管理人员和技术工人，其中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从事船舶生产的人员应当取得相应的资质或者资格的，有关人员应当在申请许可证前取得相应资质或者资格，4）有与拟生产船舶的类型，级别和等次相适应的安全生产条件，5）有与拟生产船舶的类型，级别和等次相适应的管理制度和质量保证体系6）拟从事的船舶生产符合国家产业规划和产业政策的规定，不存在国家明令淘汰和禁止投资建设的落后工艺，高耗能，污染环境，浪费资源的情况。
    72）船舶生产许可管理条例（征求意见稿）第十二条：申请一级钢质一般船舶生产许可的，由企业注册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船舶工业行政主管部门初审后，报国务院船舶工业主管部门审批。申请其他一般船舶生产许可的，由企业注册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船舶工业行政主管部门审批。
    73）현재 중국 철강산업은 철강사 난립과 중복과잉 투자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의 이 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철강업체 수는 2000년 2，997개에서 20009년 말 11，777개로

[^17]:    77）陈敏，钢铁企业准入门槛提升或将加速企业联合重组，山东治金，2009（6），31唈．
    78）왕웬룽（王元龍），중국의 WTO가입이 은행업에 미치는 이익은 무엇인가，금융과 보 험，2001년 제4권， 1 면（이정표，중국 법제의 분야별 시리즈（I）중국의 금융법제 연구： 중국의 은행법제，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10， 2011년，226면，재인용）．
    79）그러나 QFII자격을 취득한 외국투자기관은 투자규모가 제한되며 투자로 인해 취득

[^18]:    82）WTO 가입 전에는 외국은행에 대해 거래지역의 제한，인민폐업무의 취급 금지， 중국기업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朱崇實，金融法敎程，法律出版社，2011年，403면）．

[^19]:    织机构的设立及职责等，应当符合公司法，证券法等法律，法规和中国证监会的有关规定。

[^20]:    90）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第七条：外资参股证券公司的境外股东，应当具备下列条件，所在国家或者地区具有完善的证券法律和监管制度，已与中国证监会或者中国证监会认可的机构签定证券监管合作凉解备忘录，并保持着有效的监管合作关系，2）在所在国家或者地区合法成立，至少有 1 名是具有合法的金融业务经营资格的机构，境外股东自参股之日起 3 年内不得转让所持有的外资参股证券公司股权，3）持续经营 5 年以上，近 3 年未受到所在国家或者地区监管机构或者行政，司法机关的重大处罚，4）近 3 年各项财务指标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法律的规定和监管机构的要求，5）具有完善的内部控制制度，6）具有良好的声誉和经营业绩，7）中国证监会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91）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第十二条：申请设立外资参股证券公司，应当由全体股东共同指定的代表或者委托的代理人，向中国证监会提交下列文件，1）境内外股东的法定代表人或者授权代表共同签署的申请表，2）关于设立外资参股证券公司的合同及章程草案， 3）外资参股证券公司拟任主要高级管理人员符合任职条件的说明文件，4）股东的营业执照或者注册证书，证券业务资格证书复印件，5）申请前 3 年境内外股东经审计的财务报表，
    6）境外股东所在国家或者地区相关监管机构或者中国证监会认可的境外机构出具的关于该境外股东是否具备本规则第七条第2）～4）项规定的条件的说明函，7）由中国境内律师事务所出具的法律意见书，8）中国证监会要求的其他文件。

[^21]:    92）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第十五条：外资参股证券公司的董事长或者授权代表应自营业执照签发之日起 15 个工作日内，向中国证监会提交营业执照副本复印件，公司章程，由中国境内具有证券相关业务资格的会计师事务所出具的验资报告，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主要业务人员的名单，任职资格证明文件和证券从业资格证明文件，内部控制制度文本，营业场所和业务设施情况说明书，中国证监会要求的其他文件，申请经营证券业务许可证。第十六条：中国证监会接到符合要求的申请文件之日起 15 个工作日内作出决定。
    93）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第二条 第二款：本办法所称代表机构，是指外国保险机构在中国境内获准设立并从事联络，市场调查等非经营性活动的代表处，总代表处。
    94）등록자본금은 인민폐 또는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한 화폐여야 한다（第七条 合资保

[^22]:    99）外资银行管理条例 第七条：设立外资银行及其分支机构，应当经银行业监督管理机构审查批准。
    100）外资银行管理条例 第八条 第一款，第二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 10 亿元人民币或者等值的自由兑换货币。注册资本应当是实缴资本。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分行，应当由其总行无偿拨给不少于 1 亿元人民币或者等值的自由兑换货币的营运资金。
    101）外资银行管理条例 第九条 第一款：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代表处的外国银行应当具备下列条件，1）具有持续盈利能力，信誉良好，无重大违法违规记录，2）拟设外商独资银行的股东，中外合资银行的外方股东或者拟设分行，代表处的外国银行具有从事国际金融活动的经验，3）具有有效的反洗钱制度，4）拟设外商独

[^23]:    资银行的股东，中外合资银行的外方股东或者拟设分行，代表处的外国银行受到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的有效监管，并且其申请经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同意，
    5）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102）外资银行管理条例 第十一条：拟设中外合资银行的股东除应当具备本条例第九条规定的条件外，其中外方股东及中方唯一或者主要股东应当为金融机构，且外方唯一或者主要股东还应当具备下列条件，1）为商业银行，2）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已经设立代表处，
    3）提出设立申请前 1 年年末总资产不少于 100 亿美元，4）资本充足率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以及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规定。
    103）外资银行管理条例 第十四条：设立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先申请筹建，并将下列申请资料报送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1）申请书内容包括拟设机构的名称，所在地，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申请经营的业务种类等，2）可行性研究报告，3）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章程草案，4）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各方股东签署的经营合同，5）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的章程，6）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及其所在集团的组织结构图，主要股东名单，海外分支机构和关联企业名单，7）拟设外商独资

[^24]:    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最近 3 年的年报，8）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的反洗钱制度，9）拟设外商独资银行的股东，中外合资银行的外方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核发的营业执照或者经营金融业务许可文件的复印件及对其申请的意见书，10）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资料。
    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将申请资料连同审核意见，及时报送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104）정준규，중국 WTO가입 이후 건축업 개방 및 변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년 2월 28일 정책 내용 참조（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Sj9SPyk ssy0xPLMnMz0vM0Y＿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zcVP0A＿YLc0Ihy 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VfOEw $1 ? 1=1 \& w o r k d i s t=r e a d \& i d=1102515,2012$ 년 9월 5일 방문）．
    105）Ed Hammond and Jamil Anderlini，China builds way to top of construction league，

[^25]:    공정품질관리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110）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第六条：外商投资建筑业企业设立与资质的申请和审批，实行分级，分类管理。申请设立施工总承包序列特级和一级，专业承包序列一级资质外商投资建筑业企业的，其设立由国务院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审批，其资质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审批；申请设立施工总承包序列和专业承包序列二级及二级以下，劳务分包序列资质的，其设立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审批，其资质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批。中外合资经营建筑业企业，中外合作经营建筑业企业的中方投资者为中央管理企业的，其设立由国务院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审批，其资质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审批。

[^26]:    111）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第十条：申请设立外商投资建筑业企业应当向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提交下列资料，1）投资方法定代表人签署的外商投资建筑业企业设立申请书，2）投资方编制或者认可的可行性研究报告，3）投资方法定代表人签署的外商投资建筑业企业合同和章程（其中，设立外资建筑业企业的只需提供章程），4）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5）投资方法人登记注册证明，投资方银行资信证明，6）投资方拟派出的董事长，董事会成员，经理，工程技术负责人等任职文件及证明文件，7）经注册会计师或者会计事务所审计的投资方最近三年的资产负债表和损益表。
    112）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第七条：设立外商投资建筑业企业，申请施工总承包序列特级和一级，专业承包序列一级资质的程序，1）申请者向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提出设立申请，2）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在受理申请之日起 30 日内完成初审，初审同意后，报国务院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3）国务院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在收到初审材料之日起10日内将申请材料送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征求意见。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在收到征求意见函之日起30日内提出意见。国务院对外贸易经济行政主管部门在收到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书面意见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书面决定。予以

[^27]:    批准的发给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书面说明理由，4）取得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的，应当在 30 日内到登记主管机关办理企业登记注册，5）取得企业法人营业执照
    后，申请建筑业企业资质的，按照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办理。
    113）전인철，앞의 글， 50 면．
    114）이들 지역은 한국 물류기업 외에도 많은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항만을 중점으로 몰려있는데，이는 물류인프라가 항만을 중점으로 항만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전인철，위의 글， 55 면）．
    115）전인철，위의 글， 50 면．

[^28]:    116）WTO 양해각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외국인투자합영기업이 국내도로화물운송업 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고，가입 1 년 후부터는 외국투자자가 도로화물운송업체 과 반수 지분을 점유하는 것을 허가하며，가입 3 년 후부터는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도 로화물운송기업 설립을 허가하도록 되어있다．도로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중외합자， 중외합작형태는 허가하고 있으나，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의 설립은 금지되어 있다．
    117）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05）격려업종 제 21 조 제 7 항의 내용 참조．
    118）WTO 가입의정서 부록 9의＂중화인민공화국 서비스무역 양허안＂내용 참조．
    119）외상투자도로운수업관리규정 제6조．
    120）합영기업은 중국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회사로 합자기업， 합작기업의 형태를 포괄한다（임종관，이주호，중국 물류시장 진입조건과 절차： 14 개 물류부문별 진입관련 규정 검토，한국해양수산개발원，중국 물류규정 연구（I）， 2005

[^29]:    总投资 3000 万美元以下的鼓励类，允许类项目，其中北京市外商投资项目核准目录规定的项目，由市发展改革委核准；其他项目，由项目所在地的区（县）发展改革部门核准。
    165）北京市外商投资项目核准暂行实施办法 第五条：项目申请人需向项目核准机关提交项目申请报告一式3份。项目申请报告应按照国家颁布的示范文本和对外商投资项目的有关要求进行编制。项目申请报告应包括以下主要内容，1）项目名称，经营期限，投资各方基本情况，2）项目建设规模，主要建设内容及产品，采用的主要技术和工艺，产品目标市场，计划用工人数，3）项目建设地点，建设用地与相关规划，对土地，水，能源等资源的需求，以及主要原材料的消耗量，资源利用与能耗分析，4）环境影响评价，5）涉及公共产品或服务的价格，6）项目总投资及用途说明，注册资本及各方出资额，出资方式及融资方案，需要进口设备清单及金额，6）其他需说明的事项。

[^30]:    166）北京市外商投资项目核准暂行实施办法 第十四条：项目申请人凭项目核准机关按照规定权限出具的项目核准文件，到有关部门依法办理土地使用，规划，质量监管，安全生产，资源利用，城建，消防，企业设立（变更），资本项目管理，设备进口及适用税收政策等方面相关手续。
    167）审批机关应当在收到申请设立外资企业的全部文件之日起 90 天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外商投资项目的合同和章程经审批机关批准并颁发批准证书后，标志着项目审批的最后完成。外商投资项目的各方应在行政审批批准之日起 30 天内到工商登记行政机关办理登记手续，领取营业执照（参见北京市外商投资企业设立的程序有关的内容）。

[^31]:    168）上海市政府的审批权限按国家规定为，以每个外商投资项目投资总额3000万美元为上限， 3000 万美元及以上项目及增资后投资总额超过 3000 万美元的项目须报中央有关部委审批，但符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鼓励类且不需要国家综合平衡的项目，上海可以审批（需要报中央有关部委备案）道路，隧道等基础设施项目，房地产项目等非生产性项目不设审批上限，国家有专项审批规定的外商投资项目则依据规定进行审批（参见台商频道提供的上海外商投资项目的审批权限有关的内容）。
    169）上海市外商投资企业审批条例 第五条：上海市外国投资工作委员会（以下简称市外资委）主管本市外商投资企业的审批工作。在本市设立外商投资企业，由市外资委，浦东新区管理委员会，外高桥保税区管理委员会，区和县人民政府以及市人民政府其他有关主管部门（以下统称审批机关）按照国家和本市规定的权限负责审核，审批。

[^32]:    171）外商投资企业审批管理权限 新设外资企业章程的审批／审批期限：申请设立外资企业的，根据外资法第6条，外资法实施细则第11条，审批机关在收到全部规定文件之日起， 90天内决定批准或不批准。山东省政府对外承诺 15 个工作日。

[^33]:    172）罗文燕，行政许可法研究，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3年，pp．137－138．

[^34]:    173）罗文燕，앞의 책， 143 면．
    174）杨海君，앞의 책， 23 면．
    175）孙笑侠，法的现象与观念，群众出版社，1995年，68면．

[^35]:    189）罗文燕，앞의 책，202면．

[^36]:    190）전자의 경우 음향제품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条例）제5조에서는 국가가 음향제품
    의 출판，제작，복제，수입，도매 및 소매에 대하여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이러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기관리법 제 10 조는 목축업자가 엽총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신분증을 근거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다．이러한 규정은 모두 신청인의 주소지와 허가기관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관할 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후자의 경우에는 개체공상호조례에 의하면 현， 자치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에 설치된 구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을 개체공상호 의 등기기관으로 정하여 관할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개체공상호조례 제4조）．
    191）기타 국무원 및 각 부•위원회가 관할하는 허가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국성의 법인 또는 대규모 기업법인의 등기，미사일 및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허 가，생물 약품 및 관련 설비 및 기술 수출허가，화학물품 관련 설비 및 기술 수출 허가，민간총기제조허가，해양오염물질배출허가，마취약품수출입허가，마취약 원료 식물의 식재허가，수출입 영업허가，노동수출 또는 대외도급공사 회사의 등기 등，

[^37]:    국가적 및 전국적으로 영향이 큰 영업허가 사항이 해당된다．
    192）학자에 따라서는 사물관할을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즉，치안허 가，공상허가，자원허가，도시계획건설허가，문화허가，위생환경허가，교통운수허가， 대외경제허가，공산품생산허가，민간핵시설안전허가 및 핵연료허가，계측기제조수리 허가，벌과금징수허가 등이다（马怀德，行政许可，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4年，pp． 54－59）．
    193）枪支管理法 第十五条：制造民用枪支的企业，由国务院有关主管部门提出，由国务院公安部门确定。配售民用枪支的企业，由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确定。制造民用枪支的企业，由国务院公安部门核发民用枪支制造许可证件。配售民用枪支的企业，由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核发民用枪支配售许可证件。民用枪支制造许可证件，配售许可证件的有效期为三年；有效期届满，需要继续制造，配售民用枪支的，应当重新申请领取许可证件。

[^38]:    195）罗文燕，앞의 책，290면．

[^39]:    청인에 제출한 신청 자료 및 피 신청인의 답변서 및 당해 허가의 근거가 된 규범 성 문건 내지 증거자료 등을 중심으로 비공개 비대질의 심리 방식에 의하여 심리 를 종결하여 행정심판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취한다.
    197)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는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행정사건은 구체적 행 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정당 또는 부당의 문제 는 인민법원이 심리하지 아니한다.

[^40]:    198) 천강 외, 중국사법구제제도, 세종출판사, 2005년, 193 면.
[^41]:    201) 행정선행처리원칙은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며,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토록 하는 통제기능을 한다(천강 외, 앞의 책, 311면).
    202) 국가배상법 제 12 조의 규정은 배상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배상신청서 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즉, (1)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근무 사업장과 주 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과 직
